



CONTENTS

- I. 조사개요 1
- II. 현장조사 7
 - 1. 조사직원의 기본자세 9
 - 2. 조사 직원의 역할 13
 - 3. 현장조사 요령 15
 - 4. 가구명부 관리 요령 22
 - 5. 사전 준비 조사 28
- III. 조사표 작성 요령 31
 - 1. 기본 점검사항 33
 - 2. 기초조사표(가구대표 응답자, 가구원) 34
 - 3. 사건조사표 80
- IV. 내용검토 및 정리·제출 115
 - 1. 기본 점검사항 117
 - 2. 조사항목별 점검사항 117
 - 3. 조사표 편철 요령 및 제출 119
 - 4. 파라미터 작성 방법 120
- 부록 123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기간
5. 조사주기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7. 조사대상
8. 조사항목
9. 조사방법
10. 조사체계
11. 추진일정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지침서



I. 조사개요

2016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지침서

1 조사목적

- 국민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과 함께 가구와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입은 각종 범죄피해 경험(신고하지 않은 피해 포함)을 파악하여 시계열 자료형태로 구축
-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정책 수립의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

2 법적근거

- 조사실시 근거
 - 「범죄피해자 보호법」제2장 제11조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조사연혁

- 1991 : 서울시민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시험조사)
- 1994 : 제1차 전국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실시(민간기관)
- 1997~2006 : 제2차~제5차 『한국의 범죄피해에 관한 조사』(민간기관)
- 2009 : 2008년 기준『전국범죄피해조사』실시(통계청)
 - 승인 통계 지정(제40301호, 2009.08.19.)
- 2011 : 2010년 기준『전국범죄피해조사』실시(통계청)
- 2013 : 2012년 기준『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실시(통계청)
 - 조사명칭 변경
- 2015 : 2014년 기준『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실시(밀워드브라운미디어리서치)
- 2017 : 2016년 기준『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실시(칸타퍼블릭)

4 조사기간

- 조사 기준 시점 : 2017. 5. 1. 0시 기준
- 본 조 사 : 2017. 5. 1. ~ 6. 4.(5주간)

5 조사주기

- 조사주기 : 2년

6 모집단 및 표본설계

- 조사모집단 정의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일반조사구 중 보통조사구(1) 및 아파트조사구(A)의 모든 가구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 일반조사구 중 섬조사구(2), 기숙시설 조사구(3), 특수사회시설조사구(4), 관광호텔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5)는 제외
 - 2010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신축된 신규 아파트
- 층화 기준 : 16개 시도 및 동부/읍면부를 고려한 25개 층
- 표본 규모 : 전국의 610개 조사구의 6,100가구 내외
- 표본조사구 추출
 - 층별로 조사구를 주택유형, 14세 이상 인구비율, 교육정도, 조사구 번호의 분류기로 정렬한 후 조사구내 가구 수 기준으로 층별 표본규모에 해당하는 조사구를 룰비례추출(PPS)
 - 단, 다음의 경우 추출된 조사구 교체
 - 현재 통계청의 경상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표본 조사구가 추출되었을 경우
 - 20가구 미만의 조사구가 추출되었을 경우
- 표본 가구 선정
 - 추출된 조사구내 전체 가구에 대해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10가구 계통 추출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지침서

7 조사대상

- 조사단위 : 개인
- 조사대상 : 전국 6,100 표본가구의 만 14세 이상 가구원 전원
(610개 조사구, 조사구당 10가구)

8 조사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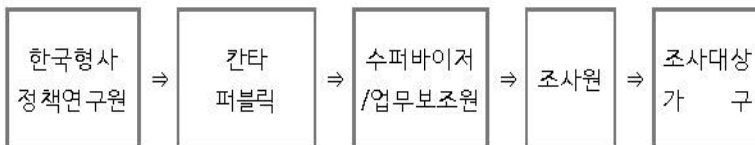
- 조사표 구성 : 기초조사표(가구응답자와 가구원 구분), 사건조사표
- 기초조사표 항목
 - 가구구성, 동네와 이웃환경, 일상생활 및 범죄예방활동, 배경문항, 작년 1년간 겪어
피해경험 및 난폭/보복운전 관련 경험
- 사건조사표 항목
 - 사건발생 일시와 장소, 범행수법, 신체피해, 피해자의 대응, 재산피해, 정신적 피해
가해자의 특성,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9 조사방법

- 조사원이 대상가구를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방법
 - ※ 응답자 희망시 응답자 기입방식 병행

10 조사체계

- 조사인력 : 전문 조사원 채용(1인 3개 조사구 30가구 기준)
- 조사체계





II. 현장조사

1. 조사 직원의 기본자세

2. 조사 직원의 역할

3. 현장조사 요령

- 가. 면접조사 요령
- 나. 예상질문과 응답방법
- 다. 조사용품의 종류

4. 가구명부 관리 요령

- 가. 조사대상 가구 선정기준
- 나. 가구 선정 방법
- 다. 유고 가구 대체 요령
- 라. 기타

5. 준비조사

- 가. 조사 홍보 및 협조 요청
- 나. 대상가구 적격 여부 확인
- 다. 표본조사구 확인 및 교체
- 라. 기타 준비사항





Ⅱ. 현장조사

2016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지침서

1 조사 직원의 기본자세

가. 조사 직원의 마음가짐

- 조사 직원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칸타퍼블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써 공손하고 유쾌하며, 자신감을 갖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조사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할 뿐 아니라, 응답자에게 그들의 참여가 가치 있고 필수적임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 조사 직원의 태도

- 단정한 복장과 겸손한 태도로 응답자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조사지침을 반드시 숙지함으로써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응답자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한다.
- 면접과정에서 편향된 질문으로 응답을 유도하거나 상식 등 주관적인 판단으로 조사표를 작성해서는 안 된다.
- 자신이 직접 판단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사례는 조사표에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고, 반드시 수퍼바이저나 담당 연구원과 상의한 후 기입하도록 한다.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8조**

제8조 (현장조사 직원 기본자세) 현장조사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본자세를 가져야 한다.

1. 조사지침의 정확한 이해 및 원칙에 따른 조사업무 처리
2. 응답자와의 유대 강화
3. 비표본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성실한 조사
4.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응답자 정보의 비밀엄수
5. 그 밖에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 유지

다. 조사 직원의 의무

- 조사기간 중에는 반드시 조사원증을 패용하고, 조사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한다.
- 조사는 반드시 교육받은 당사자가 해야 하며, 가족이나 친구에게 대리 조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모든 내용은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통계법 제33조, 제34조)
 -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통계법 제39조)
- 담당 연구원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진행사항을 보고한다.
 - 완성된 조사표는 수퍼바이저나 담당 연구원에게 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 특별한 사유(질병 등)로 조사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수퍼바이저나 담당 연구원에게 알려야 한다.



통계법개정법률 제14467호 2016.12.27. 공포) 관련 조문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 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5.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라. 조사원 안전수칙

- 조사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 조사원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 상해사고에 대비한다.
- 부득이 야간에 조사해야 할 경우는 조사원 2인이 함께 다니거나, 가족 친지 등과 연락하여 동행하도록 한다.
- 조사당일의 일정을 가족에게 알려주고 도중에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사항을 가족에게 알려준다.
- 사고나 부상 시 긴급구조 요청 후 즉시 가족과 수퍼바이저에게 알린다.
- 긴급상황 시 연락처
 - 범죄신고 : 112
 - 긴급재난 · 구급차 : 119
 - 응급 의료상담 : 1339
 - 전국 경찰서 안내 : 1566-0112

2 조사 직원의 역할

가. 조사원

- 가구명부, 조사구요도(사본), 조사표 등 조사관련 용품을 슈퍼바이저에게 수령한다.



조사관련 용품

1 가구명부	6 답례품	11 필기도구
2 조사표	7 답례품 지급명부	12 가방
3 조사지침서	8 비밀보호용 봉투	
4 조사안내문 및 공문	9 조사원증	
5 조사구요도	10 알림스티커	

-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응답내용을 조사표에 기입한다.
- 매주 슈퍼바이저에게 작성된 조사표 내용검토를 받은 후 완료된 조사표는 제출하고, 미완료 조사표는 보완 후 제출한다.
- 응답자에게 답례품을 지급하고 「답례품 지급명부」의 수령자 성명란에 수령자 서명을 받는다.

나. 슈퍼바이저

- 조사관련 용품 관리 및 배부
 - 담당 연구원으로부터 조사용품을 수령한 후 조사원에게 배부한다.
 - 조사표류는 한 번에 모두 배부하지 말고 조사원별로 조사 진척률을 감안하여 배부함으로써 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한다.
- 조사원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지도
 - 담당 조사원별 조사 진척률을 파악하고 조사부진 조사구를 독려한다.



- 중도 포기 조사원에 대해서는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대체하고, 방치된 조사구가 있는지 수시로 파악한다.
 - 반드시 교육받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다른 사람이 조사하는 경우에는 담당 연구원에게 즉시 보고 후 조치한다.
 - 조사기간 중 조사원이 조사에 전념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한다.
 - 조사원의 질의 중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질문은 담당 연구원과 협의하여 답변하고, 문제점은 수시로 담당 연구원에게 보고 후 조치한다.
 - 조사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가구를 매일 파악하여 조사원과 함께 현지 방문하여 설득 조사를 하고, 담당 연구원에게 설득 지원이나 대응지침을 요청한다.
 - 조사에 강력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가구를 파악하여 조사원과 함께 현지 방문하여 함께 설득하고, 담당 연구원에게 설득 지원이나 대응지침을 요청한다.
 - 조사불능인 가구를 매일 파악하여 원칙에 따라 대체 가구를 선정하여 조사한다.
- 조사표 내용검토 및 공지사항 전달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조사원별로 수시로 접수하여 내용을 철저히 검토한다.
 - 검토 후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조사원에게 보완토록 지도한다.
 - 수시로 전달되는 조사내용 관련 지침을 조사원에게 알려 준다.
- 완료된 조사표류 취합 및 관리
- 입력이 완료되면 조사표류를 취합하여 편철하고, 답례품 지급 내역을 확인한다.

3 현장조사 요령

가. 가구 방문 절차

절차	내용	세부 내용
1차 방문	가구대표 조사표 (가구정보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가구 방문하여 인사장 수령 확인 후 조사동의를 구한 후 조사 시작 조사 대상 가구원 수 파악(만14세 이상 가구원) 먼저, 가구 대표 조사표 작성 가구 대표 조사 후, 현장에 가구원이 있을 경우, 가구원 조사표 면접 실시 조사대상이지만, 부재중이어서 설문에 응답하지 못한 가구원 수 파악하여 면접조사가 가능한 시간 확인 응답자가 자기기입식을 원하거나 약속시간을 잡고 2회 이상 방문했으나 응답자를 만날 수 없는 경우 비밀보호용 봉투에 기초조사표(+자기기입요령서)를 넣어 전달하고 반드시 응답 후 밀봉하도록 요청 가구대표가 응답을 하고 가구원이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할 경우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가구대표가 가구원에게 설명해주도록 안내 가구원이 자기기입식으로 진행될 경우 조사원이 가구원 연락처 파악하여, 가구원이 설문에 응답하도록 독려 및 안내하고 조사표 수거 날짜 약속 가구 조사 완료 시 가구 사례비를 우선 제공하여 가구원 조사 독려 가구 부재: 알림스티커 부착 후 향후 최소 3회 이상 재방문 조사거부(불응): 최대한 설득을 했어도 거절 시 표본 대체 빈집/조사 부적격: 이사, 상가, 어린이집 등의 경우 표본 대체
2차 방문	가구원조사표 (범죄 선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속한 날짜에 다시 방문하여 해당 가구원 전원 응답 완료 확인 후, 조사원이 응답된 설문지의 스크리닝 질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건조사표 작성 부수를 결정하여 해당 가구원에게 조사표 전달 현장에 가구원이 있을 경우, 사건조사표 면접을 실시하고, 응답자가 밝히기 꺼려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 시 응답자와 다른 가구구성원을 분리하여 1:1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 성실한 응답을 유도 응답자가 자기기입식을 원할 경우 사건조사표 작성 부수를 결정하여 해당 조사표와 함께 밀봉용 회수 봉투를 제공하고 기입 후 밀봉을 요청하면서 사건조사표 작성 기입 요령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조사표 수거 날짜 약속 기초조사표가 자기기입식으로 진행된 경우 조사원이 해당 가구원에게 스크리닝 질문에 대한 면접을 별도로 진행하여 다시 한번 피해경험에 대해 확인. 만일, 현장 면접조사가 불가능할 경우는 전화로 통해서라도 스크리닝 질문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해야 함 스크리닝 질문은 범죄피해 조사의 목적이라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하게 파악되어야 하는 항목이므로 조사원이 꼼꼼히 체크 자기기입식 조사의 경우 작성결과에 따라 사건조사표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조사원이 봉투 수거 시 개봉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을 미리 알림 가구원 조사 완료 후 가구원 사례비를 우선 제공하여 사건조사표 작성 독려
3차 방문	사건조사표 (범죄피해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약속한 날짜에 다시 방문하여 해당 가구원의 사건조사표 응답 확인 수거 현장에서 응답된 내용 검수(현장에디팅) 사건조사표 작성별 사례비 제공



나. 면접조사 요령

1) 가구를 방문하기 전

- 조사표의 구성 및 순서, 항목별 지침을 충분히 숙지한다.
- 조사에 필요한 자료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사원증, 가구명부, 조사구요도, 조사표, 지침서, 조사안내문 및 공문, 알림스티커, 비밀보호용 봉투, 답례품 및 답례품 지급명부, 사무용품 등을 휴대

2) 가구를 방문할 때

- 조사지역에 도착하면 항상 조사원증을 잘 보이도록 패용하고, 누구에게나 공손히 대한다.
 - 조사대상자가 조사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고 빈번히 왕래하기 때문에 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조사대상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
 - 단정한 복장과 바른 언행은 지역주민들에게 신뢰감과 좋은 인상을 줌
- 방문시간은 언제라도 좋으나 이른 아침이나 한밤중은 가급적 피하도록 한다.
- 대문을 두세 번 두드리거나 벨이 있을 때는 약간 동안만 눌러야 한다.
 - 특히, 아파트는 복도나 문 앞에서 대화하는 내용을 다른 가구에서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선 현관 안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음
 - (※ 현관문은 상황을 봐 가면서 약간 열어 두는 것이 좋음)
- 대문이나 현관문이 열려있더라도 함부로 들어가 필요 없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한다.

3) 가구원을 만났을 때

- 먼저 방문목적과 자신에 대해 소개한다.
-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승인한 공식통계조사이며, 응답내용은 통계작성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고, 법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한다.
- 조사표를 가지고 면접을 시작한다. 성폭행, 성적접촉 등에 관한 사항은 민감한 부분이므로, 모든 질문을 할 때 같은 어조로 물음으로써 응답자가 편안하게 자신의 피해상황에 대해 말할 수 있게 한다.
- 응답자가 그 자리에서 당장 답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다른 가구원의 사건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해 주고, 시간을 두고 보완하도록 요청한 뒤 조사표를 회수할 재방문일시를 약속한다.
- 약속시간은 엄수하도록 하며, 면접을 끝내기 전에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기입내용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 작성되었는지, 항목 간에 상충된 내용은 없는지 그 자리에서 꼼꼼히 확인한다.
- 조사표를 완성한 가구에 답례품을 지급하고, 서명을 받은 후 가구를 떠날 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정중히 인사한다.

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현장조사 운영지침 제5조(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현장조사 직원은 면접조사 시 응답자의 응답부담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면접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2. 처음 조사 시에 협조공문 제시
3. 가능한 응답자가 희망하는 시간에 조사
4.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 금지
5. 기타 응답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행동 금지



4) 응답자 설득방법

○ 표정과 시선

- 응답자에게 질문을 할 때 또는 답변을 들을 때 응답자와 시선을 마주치도록 노력한다.
- ※ 시선을 마주치는 것은 응답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작은 관심과 배려가 진지하게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 대화의 요령

- 조사에 대한 불신, 응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 등 응답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하도록 한 후 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한다
- 조사원과 응답자 사이에 제3자인 가족, 친구, 이웃사람 앞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응답자와 둘이서만 조사를 진행한다
- 응답자가 조사에 응해 주기로 했다면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소요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한다.

○ 응답의 확인

- 응답자의 응답이 분명히 질문을 잘못 이해하거나 또는 의미전달이 안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단 응답을 받아들인 후 “죄송합니다만. 한 번 더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한 후 재 질문한다.
- 응답자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에도 우회적으로 한 번 더 질문하여 정확한 응답이 나오도록 재 질문한다.

○ 캐어묻기

- 응답자가 질문의 의도와 맞지 않는 엉뚱한 응답을 할 경우에는 부가적으로 질문을 더하여 완전하고 충분한 대답을 얻는다.
- 대화의 추임새로 면접 동안에 응답자가 얘기를 할 때에 “예, 그렇군요?”, “그럴 땐 힘드셨겠어요” 등의 문자를 써서 공감 표시를 한다.
- 응답자의 대답을 되풀이하여 얘기를 해 주고, 대답이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없을 때에는 한 번 더 명확한 답을 하도록 질문을 한다.

○ 조사 마무리하기

- 조사가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입한 것은 없는지 조사표를 면밀히 검토 후 종료한다.
- 조사가 끝났더라도 끝까지 친절할 태도를 잊어서는 안 되며, 조사에 응해 주신데 대한 감사의 답례품을 반드시 전달한다.
- 혹시 불명확한 점이 있거나 이상한 점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해 둔다.
- 자기기입식 조사표 회수 시에는 회수 시간을 정하여 약속한 날짜에 꼭 방문하여 회수하고, 방문 전 응답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 마무리 여부를 확인하고, 마무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일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자기기입식 응답자는 비밀보호용 봉투를 함께 배부하고, 조사표 회수 시 조사표 완성 여부(또는 전화번호)를 반드시 확인해 두어야 한다.



다. 예상 질문과 응답 방법

○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란?

☞ 전국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크고 작은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들은 이미 신고되어 처리되었거나 처리 중에 있는 범죄들도 있으나 이 외에도 사소한 범죄 또는 미신고로 묻혀버린 범죄유형들도 상당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요 범죄의 유형과 실태를 파악하고, 숨은 범죄의 발생률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 이 조사는 왜 합니까?

☞ 최근 범죄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된 상태입니다.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는 국민들이 경험한 범죄피해 정도와 위해 요인을 파악하여 정부의 범죄피해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합니다.

○ 어디서 조사합니까?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주관하고 조사는 조사 전문기관인 칸타퍼블릭에서 실시합니다.

○ 지금 시간이 없어서...

☞ 지금 바쁘셔서 면접을 하기 어려우시다면, 언제 다시 방문하면 될 것인지 물어봅니다.

☞ 응답자가 시간이 없다고 직접 말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설득합니다.

○ 이러한 조사는 예산 낭비가 아닙니까?

☞ 통계는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정책 수립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통계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 정책수립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초자료입니다.

이러한 조사가 없다면 세금이 더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결국 조사로 인한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 이 조사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 ☞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하여 응답하는 것으로 대상가구가 응답하지 않으면 전체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게 되어 결국 자료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 모든 국민은 통계조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합니다(통계법 제32조)
- 개인 사생활이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 ☞ 조사 내용은 엄격하게 법으로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남에게 누설되지 않으니 안심하십시오.
 - ☞ 조사된 내용은 모두 전산 처리되어 어느 집의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식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응답자 이외에는 이름을 작성하지 않도록 조사표를 설계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가구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 우리나라의 모든 가구를 조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 가구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뽑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정렬하고, 컴퓨터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표본으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어떤 가구가 표본으로 뽑힐지 모릅니다.
 - ☞ 응답자의 가구가 이 통계에서 전국 가구를 대표하도록 선정된 것입니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무슨 일을 하는 곳입니까?
 - ☞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정책 연구기관으로서,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및 그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연구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정책수립과 범죄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입니다.



라. 조사용품의 종류

- 휴대용품 : 조사원증, 조사지침서, 가방, 조사용품(필기구), 조사안내문 및 공문, 파라데이터 수집표
- 조사도구 : 조사표, 가구명부, 조사구 요도, 답례품(상품권), 답례품 지급 명부, 비밀보호용 봉투, 알림스티커

4 가구명부 관리 요령

가. 조사대상 가구 선정기준

- 조사대상 가구는 조사구별로 부여된 시작번호와 추출간격으로 선정한다.
- 조사구별 가구 일련번호 부여
 - 조사구별로 거쳐번호, 가구번호 순으로 정렬한 후 첫 번째 가구부터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빈집'도 일련번호를 부여함)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추출한 조사구별 가구명부를 조사원에게 A3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뿐 아니라, 모바일 웹 버전으로도 제공한다.
 - 「2016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가구명부」의 음영 처리된 가구가 조사대상 가구이다.
 - 가구명부는 현장조사에 활용하며, 변동사항은 빨간색 펜으로 수정(두 줄)하고 수정 시에는 해당 사유를 비교란에 기입한다.
 - 모바일 웹으로 구축한 가구명부의 경우 방문날짜와 방문시간을 기록하기 간편하기 때문에 종이와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 조사대상 조사구가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수퍼바이저에게 요청하여 처리한다.
- 불응, 불능 등 조사가 불가능한 가구는 조사대상 가구의 일련번호 다음 번호순으로 조사를 한다.

나. 가구 선정 방법

1) 1단계 : 기본 조사대상 가구 선정

○ 조사대상 : 가구명부 내 음영처리된 가구(원표본)

- 해당 조사구 내에서 일정 간격에 의해 추출하였으며, 가구명부에서 음영처리된 가구가 조사대상 가구임.

[2016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가구명부 예시]

알면 번호	기값	조사구 특성	거처 번호	가구 번호	시도명	시군구 명	읍면 동명	도로명	공동주택 명칭	동	호수	가구주 명	가구원 수	거처의 종류	방문	조사 현황
1	11010720801	1	001	0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수일로 104번길	삼성 아파트	209	101	남윤광	4	아파트	5월 29일 10시	
2	11010720801	1	001	0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수일로 104번길	삼성 아파트	209	102	홍기홍	4	아파트		
3	11010720801	1	001	00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수일로 104번길	삼성 아파트	209	103	박건창	3	아파트		
4	11010720801	1	001	0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수일로 104번길	삼성 아파트	209	201	서동근	3	아파트		
5	11010720801	1	002	0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수일로 104번길	삼성 아파트	209	202	박순남	1	아파트		
6	11010720801	1	002	0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수일로 104번길	삼성 아파트	209	203	권경혁	3	아파트		
7	11010720801	1	002	00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수일로 104번길	삼성 아파트	209	301	김정석	4	아파트		
8	11010720801	1	003	0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29번길			1층	신종협	4	단독 주택		
9	11010720801	1	003	0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29번길			2층	조영자	2	단독 주택		

}}

52	11010720801	1	009	0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34번길				김상환	2	단독 주택		
53	11010720801	1	010	0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34번길				김호철	3	단독 주택		
54	11010720801	1	010	0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34번길				민석범	4	단독 주택		
55	11010720801	1	010	00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34번길				이선근	3	단독 주택		
56	11010720801	1	011	0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34번길				성기창	6	단독 주택		



2) 2단계 : 빈집, 불응, 불능 시 조사대상 가구 선정 방법

- 1번 가구가 빈집, 불응, 불능 시 조사대상 가구(1번 가구)의 다음 가구인 2번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한다.
- 대체한 2번, 3번, 4번 가구도 빈집, 불응, 불능 시 6번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한다.
 - 5번 가구는 기본 조사대상(응영처리된 가구) 가구로 선정된 가구이기 때 문에 6번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한다.

[2016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가구명부 예시]

일련 번호	가급	조사구 특성	거처 번호	가구 번호	시도명	시군구 명	읍면 동명	도로명	공동주택 명칭	동	호수	가구주 명	가구원 수	거처의 종류	방문1	조사 현황
1	11010720801	1	001	0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수일로 104번길	삼성 아파트	209	101	남윤광	4	아파트	5월 29일 10시	95
2	11010720801	1	001	0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수일로 104번길	삼성 아파트	209	102	홍기홍	4	아파트	5월 30일 12시	92
3	11010720801	1	001	00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수일로 104번길	삼성 아파트	209	103	박건창	3	아파트	5월 02일 18시	92
4	11010720801	1	001	0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수일로 104번길	삼성 아파트	209	201	서동근	3	아파트	5월 09일 15시	92
5	11010720801	1	002	0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수일로 104번길	삼성 아파트	209	202	박순남	1	아파트		
6	11010720801	1	002	0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수일로 104번길	삼성 아파트	209	203	권경혁	3	아파트	5월 09일 15시	91
7	11010720801	1	002	00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수일로 104번길	삼성 아파트	209	301	김정석	4	아파트		
8	11010720801	1	003	0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29번길			1층	신종협	4	단독 주택		
9	11010720801	1	003	0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29번길			2층	조영자	2	단독 주택		

}}

52	11010720801	1	009	0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34번길				김상환	2	단독 주택		
53	11010720801	1	010	0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34번길				김효철	3	단독 주택		
54	11010720801	1	010	0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34번길				민석범	4	단독 주택		
55	11010720801	1	010	00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34번길				이선근	3	단독 주택		
56	11010720801	1	011	0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34번길				성기창	6	단독 주택		

3) 3단계 : 기타 조사대상 변경

- 당초 조사대상 가구(7번 가구)를 허물고 원룸, 다세대 등의 가구로 신축되었을 경우
- 원표본 조사대상 가구(7번 가구)는 빈집 처리하고, 다음 가구(8번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한다.

[2016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가구명부 예시]

알련번호	기법	조사구 특성	거처 번호	가구 번호	시도명	시군구 명	읍면 동명	도로명	공동주택 명칭	동	호수	가구주 명	가구원 수	거처의 종류	방문	조사 현황
1	11010720801	1	001	0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수일로 104번길	삼성 아파트	209	101	남윤광	4	아파트	5월 29일 10시	90
2	11010720801	1	001	0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수일로 104번길	삼성 아파트	209	102	홍기홍	4	아파트	5월 30일 12시	
3	11010720801	1	001	00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수일로 104번길	삼성 아파트	209	103	박건창	3	아파트	5월 02일 18시	
4	11010720801	1	001	0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수일로 104번길	삼성 아파트	209	201	서동근	3	아파트	6월 05일 15시	90
5	11010720801	1	002	0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수일로 104번길	삼성 아파트	209	202	박순남	1	아파트		
6	11010720801	1	002	0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수일로 104번길	삼성 아파트	209	203	진광혁	3	아파트	6월 08일 15시	
7	11010720801	1	002	00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수일로 104번길	삼성 아파트	209	301	김정석	4	아파트		95
8	11010720801	1	003	0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28번길			1층	신종협	4	단독 주택		91
9	11010720801	1	003	0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28번길			2층	조영자	2	단독 주택		
}}																
52	11010720801	1	009	00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34번길				김상환	2	단독 주택		92
53	11010720801	1	010	0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34번길				김호철	3	단독 주택		91
54	11010720801	1	010	0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34번길				민석범	4	단독 주택		
55	11010720801	1	010	00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34번길				이신근	3	단독 주택		90
56	11010720801	1	011	0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34번길				성기창	6	단독 주택		
54	11010720801	1	007	00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34번길				김혜연	4	단독 주택		
56	11010720801	1	008	00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강동	정자로 234번길				김준성	3	단독 주택		99



다. 유고 가구 대체 요령

1) 응답 불응

- 사유 : 사생활 노출 기피, 가정 사정·불화(실직, 부부이혼 등), 바쁘거나 귀찮아서, 정부 불신 등
- 조사원은 조사대상 가구를 반드시 3회(1일 1회 기준)이상 방문하고, 그래도 응답을 거부할 경우 슈퍼바이저와 동행하여 설득
 - 통·시장, 아파트관리사무소, 이웃을 통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
 - 비밀을 원하는 경우에는 비밀보호용 봉투에 조사표를 넣어 배부 및 회수(비밀보호용 봉투 앞면에 조사원 이름, 연락처를 기입하여 배부)
- ☞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음에도 거부를 할 경우에는 대체

2) 일시 부재

- 사유 : 조사기간 중 출장, 취업, 교육, 병원입원(수술, 출산, 사고 등)으로 가구원 모두를 못 만나는 경우
- 가구원 모두 부재중인 경우 옆집이나 이웃에게 수소문하여 확인하고, 3일 이상(하루 1회 이상) 방문하여도 만나지 못할 경우 부재로 처리

3) 응답 곤란

- 사유 : 정신이상 및 장애, 고령, 자연재해, 언어문제 등으로 면접이 불가능한 경우
- 단, 언어문제 등으로 응답이 불가능한 사람이라도 가구대표 응답자의 대리응답을 허용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기초조사표 'H. 가구구성'의 사유코드(1. 대리응답)으로 기재한다.
- 조사대상 가구에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만 살고 있어 조사표를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 응답 곤란으로 처리하고, 다른 가구로 대체하여 조사한다.
 - ☞ 남편이 한국인,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이 대리응답 가능

4) 빈집

- 사유 : 이사, 폐가, 재개발 등으로 공가, 폐가인 경우

5) 기타

- 사유 : 만 14세 미만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 사람이 살지 않는 곳(상가, 여린이집, 놀이방, 교회 등), 집단시설(기도원, 요양소, 기숙사, 관사 등), 철거 등으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7) 유고 코드

- 조사대상 가구의 유고 형태에 따라 최종 대체 코드를 가구명부의 대체 사유에 기재

구 분		유고 코드	대체 사유
조사된 가구	원표본 가구	90	가구명부에서 처음부터 조사대상이면서 조사된 가구
	대체표본 가구	91	가구명부에서 원표본을 실패해 대체해 조사된 가구
조사대상 가구는 있으나 조사 못함	응답 불응	92	가구대표 응답자를 3일 이상 만나 설득했음에도 사생활 노출 기피, 바쁨, 가정사정, 정부불신 등의 이유로 응답을 거부함.
	일시 부재	93	조사기간 중에 3일 이상 찾아 갔으나 여행, 출장, 병원입원 등의 이유로 가구원 모두를 만날 수 없었고, 이웃집이나 방문안내장을 통해서도 조사기간 동안 연락이 어려움
	응답 곤란	94	고령, 장애, 자연재해, 언어문제 등의 이유로 조사 불가
조사대상 가구가 없음	빈집	95	이사, 폐가, 재개발 등의 이유로 집에 아무도 살지 않고, 이웃집을 통해서도 확인함
	기타	99	만 14세 미만의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 상가 등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기숙사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 조사구 내 대상 가구가 적은(30가구 미만) 경우 가구대체를 더욱 신중하게 실시하고, 10가구를 조사하기 어려울 경우 즉시 수퍼바이저에게 알리고 담당 연구원에게 통보한다.
- 시작번호와 추출간격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므로 가구명부의 음영 처리된 가구를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가구를 추가한 경우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기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가구를 대체할 경우 유고 코드를 가구명부에 정확히 기입하여 불응률, 무응답 집계 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사전 조사 준비

가. 조사 홍보 및 협조 요청

- 조사 시작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통반장 등에 협조를 구한다.
-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가구 방문에 대한 사전 협조(필요시 협조공문 전달)를 얻는다.
- 단독주택의 경우, 통·리·반장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나. 대상가구 적격여부 확인

- 대상 조사구를 방문하여 조사구 범위 및 지형·지물을 확인한다.
-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적격가구인지 확인 한다.
- 적격가구인 경우 사전에 발송한 인사장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지 못한 가구는 배부 받은 인사장을 전달하고 본 조사 기간에 재방문 할 것임을 알려준다.
 - 응답자가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칸타퍼블릭 홈페이지(<http://www.kantarpublish.co.kr/>) 게시판을 통해 안내하거나 상담전화(☎02-3779-4425)를 알려주도록 한다.

다. 표본조사구 확인 및 교체

- 조사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대체하지 않고 당초 조사구로 조사한다.
 - 조사구 내 위험이나 조사장애가 생겨 조사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조사구 내 조사대상 적격 가구 수가 10가구 미만인 경우



조사구

조사대상 지역에 대하여 식별이 확실한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지도상에서 일정한 가구 수가 포함되도록 분할한 조사담당구역을 말하며, 보통 1조사구에 약 60가구 내외를 기준으로 구성

- 조사구 교체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교체해야 할 조사구가 발생한 경우, 조사원은 수퍼바이저에게 교체를 요청하고 수퍼바이저는 담당 연구원에게 교체를 요청한 후 교체한다.
- 배부된 가구명부의 가구주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된 자료이므로 현재 다른 사람이 살고 있을 수 있음
 - 금번 조사는 지정된 가구를 찾아가 조사하는 것이므로 가구명부의 가구주와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부재나 빈집 등으로 유고처리하면 안됨

라. 기타 준비사항

- 수퍼바이저는 가구명부, 조사표, 조사용품, 가방, 통화권 등 조사에 필요한 용품을 조사원에게 배부하고, 조사원에게 배부 수량이 맞는지 확인한다.
- 조사원은 배부 받은 조사용품의 종류와 수량이 맞는지 확인하고, 틀릴 경우 수퍼바이저에게 문의한다.
- 조사원은 조사표 표지에 시·도, 시·군·구, 읍·면·동과 조사구 번호, 실사 사무소명, 조사원 성명 및 전화번호를 미리 기재하여 조사를 준비한다.



III. 조사표 작성 요령

1. 기본 점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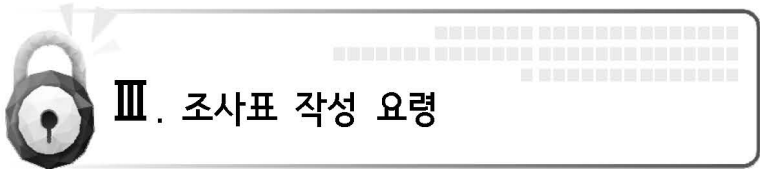
2.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 가구원)

- 가. 기초조사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나.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용) 표지 작성 요령
- 다. 기초조사표 문항별 작성 요령

3. 사건조사표

- 가. 사건조사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나. 사건조사표 표지 작성 요령
- 다. 사건조사표 문항별 작성 요령





Ⅲ. 조사표 작성 요령

2016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지침서

1 기본 점검사항

가. 전체 조사표 구성

- 전체 조사표는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로 구분된다.
- 기초조사표는 '가구대표응답자용(녹색)'과 '가구원용(연두색)'으로 구분된다.
 - 가구원용은 가구와 관련된 문항이 삭제된 형태의 조사표로 가구원 개인에 관한 문항만 조사한다.
 - (※ 가구와 관련된 문항은 13번, 17번~20번, 22번)
- 사건조사표(청색)는 가구대표 응답자 및 가구원 모두 동일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조사표 내용 구성

1) 기초조사표 주요 내용

- | | |
|-------------------------------|------------------|
| H. 가구 구성 | I. 동네와 이웃 환경 |
| II.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 III. 배경 문항 |
| IV.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 V. 난폭/보복운전 경험 관련 |
| VI. 조사원 확인 사항 | |

2) 사건조사표 주요 내용

- | | |
|-----------------|--------------------|
| I.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 II. 범행수법 |
| III. 신체 피해 | IV. 피해자의 대응 |
| V. 재산 피해 | VI. 정신적 피해 |
| VII. 가해자의 특성 | VIII. 경찰 신고와 처리 현황 |



3) 조사표 작성 개요

- 기초조사표는 **2016년** 한 해 동안의 범죄피해경험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태도를 알아보기로 구성된 것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여부와 무관하게 대상가구의 가구대표응답자 및 만14세 이상 가구원 모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 만 14세 기준(양력 2003년 1월 이전, 음력 2002년 12월 이전)

2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 가구원)

가. 기초조사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스크리닝 질문에서 주의해야 할 점
 - ✓ 항상 응답자에게 조사대상기간을 재확인시켜 **작년(2016년) 한 해 동안(2016. 1.1.~12.31.)** 경험한 범죄피해만을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 ✓ 8회에 걸친 스크리닝 질문들은 특정 범죄유형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응답자 개인이 **2016년** 한 해 동안 경험한 피해사건 총 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앞선 질문에서 피해경험이 회상된 사건이라면, 동일한 사건이 뒤이은 스크리닝 문항에서 다시 피해건수로 잡히지 않도록(“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때, 해당 지문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응답한 문항의 번호를 직접 제시한다. 가령, 문항 **26**번이라면 응답자에게 앞의 문항 **24**번과 **25**번에서 있다고 하신 피해 경험 말고 또 다른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것임을 설명한다.
 - ✓ 스크리닝 문항에 대한 예시내용을 응답자가 주의깊게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예시를 모두 듣고 난 후 ‘없었다’고 응답한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23**번, **26**번 문항 제외)
 - ✓ 응답자가 ‘기초조사표’의 응답을 모두 마치면, **23**번~**30**번 문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원이 직접 ‘V. 조사원 확인 사항’을 작성한다.

- ✓ 만일, 자기기입식으로 수집된 기초조사표의 경우 해당 가구원에게 스크리닝 질문에 대한 면접조사를 별도로 진행하여 범죄피해 경험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 ✓ 응답자가 자기기입식을 원했을 경우 조사표를 반드시 비밀보호용 봉투에 넣어 전달하고 응답 후 반드시 밀봉해서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 ✓ 범죄피해경험과 같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초조사표 뿐 아니라 사건조사표에 대한 면접 과정에서는 반드시 1:1로 진행하여 다른 가구구성원이 함께 진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V. 조사원 확인 사항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 ✓ ‘확인 사항’은 스크리닝 문항(23번~30번)별로 응답자가 회상한 사건들의 횟수를 정리하는 것이다.
- ✓ 본 확인 사항은 아래의(3단계)를 거쳐, 각 응답자가 최종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건조사표 총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 ✓ 조사원은 반드시 응답자에게 확인해 가면서 전체 피해경험 총 수를 정리하여 기입한다.

[1단계] : 피해경험 수의 결정방법

- ① 범죄피해경험 관련 문항의 피해경험 수를 옮겨 적습니다.
- ② ‘1. 점검항목’에서 2개 이상의 관련문항에 표시된 경우 동일한 피해경험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친 경우 3개 문항에 표시될 수 있으나, 동일 피해경험인 경우 **1건으로만** 표시합니다.
- ③ 문항별 피해경험여부 건수를 합산하여 총 피해경험 수에 기입합니다.
- ④ 총 피해경험 수와 응답자가 기억하는 피해경험수를 확인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 조사표를 재검토합니다.



[2단계] : 상습피해여부의 확인 및 결정방법

※ 상습피해란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톡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을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합니다.

- ① 문항별 피해경험 수가 5건 이상인 경우 동일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합니다.
- ② 동일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각 사건을 각각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③ 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상습피해로 보며, 그 상습피해 경험수를 상습피해 수에 기입합니다.

[3단계] : (최종 작성해야 할) 사건조사표 수의 결정방법

- ① 두 개 이상의 문항에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동일한 경험이 중복되었는지 재확인하고,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 수에 부수를 기입합니다.
 - ② 문항별로 피해 경험수가 5회 이상인 경우 상습피해이면 사건조사표는 1부, 각 경험이 구별 가능한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는 각각 모두 기입합니다.
 - ③ 문항별 사건조사표 부수를 합산하여 총 사건조사표수에 기입합니다.
 - ④ 총 사건조사표 수를 응답자에게 확인하고, 그 사건 부수만큼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 상습피해가 0일 때 사건조사표 수는 피해경험 수와 같다
 - 상습피해(5건 이상이면서 각 사건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와 개별피해가 있을 경우, 개별사건피해 수와 사건조사표는 같고 상습피해는 사건조사표 1부만 작성한다.
- ✓ 사건조사표 수 결정방법에 따라 '1. 점검항목' 작성이 끝난 뒤, 개별 응답자가 보고한 범죄피해경험 사건 수만큼, 각 사건별로 '사건조사표' 작성을 바로 진행한다. 스크리닝 문항을 통해 사건에 대한 응답자의 기억을 자극시켜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
- ✓ 만일, 응답자가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기초조사표'의 작성으로 조사를 종료하고, 타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다.

나.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용) 표지 작성 요령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 ◆ 조사표 표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는 해당 가구명부와 동일하게 기입한다.
 - 가구원번호는 H. 가구 구성의 가구원 번호를 기입한다.
- <유의사항>
 - 이 자료는 조사 내용 검토 및 결과 집계 시 가구를 판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잘못 기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사 사무소	조사원 성명	조사원 전화번호	조사방법	가구대표 응답자 시간조사표 수
		() -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총 () 부

- ◆ 조사원 관련사항
 - 조사표를 가구에 배부하기 전, 조사원이 실사 사무소명, 조사원 성명, 조사원의 전화번호를 미리 기입하여 둔다.
-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해당 조사표 작성 시 주로 사용한 조사 방법에 표기하도록 한다.
- ◆ 사건조사표 수
 - 가구대표 응답자가 범죄피해 경험을 겪고 작성한 사건조사표 수를 작성한다.

가구 전체 조사표 수 총 () 부	가구 전체 기초조사표 수 총 () 부	가구 전체 사건조사표 수 총 () 부
------------------------	--------------------------	--------------------------

- ◆ 가구 전체 조사표 수
 - 해당 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원이 작성한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 수를 더한 조사표 수를 기입한다.
- ◆ 가구 전체 기초조사표 수
 - 해당 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원들이 작성한 기초조사표 수를 더하여 기입한다.(녹색+연두색 조사표)
- ◆ 가구 전체 사건조사표 수
 - 해당 가구의 조사대상 가구원들이 작성한 사건조사표 수를 더하여 기입한다.(청색 조사표)



다. 기초조사표 문항별 작성 요령

H 가구 구성

H 2017년 5월 1일 현재 귀댁에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 모두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가구원 번호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실제 생년월	혼인상태		직업 관련 등	총사상 지위	장애인만 응답		외국인만 응답		조사원이 적어 붙습니다	
		① 남	② 여		① 미혼	② 현재 배우자 있음			③ 사별이나 이혼	장애인 복지카드 보유 여부	① 있음	② 없음	출신 국가	사유 코드
1	① 가구 대표 응답자	(양 / 음)년	필요											
2		(양 / 음)년	필요											
3		(양 / 음)년	필요											
4		(양 / 음)년	필요											
5		(양 / 음)년	필요											
6		(양 / 음)년	필요											
7		(양 / 음)년	필요											
8		(양 / 음)년	필요											

<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 보기 >		< 직업 관련 등 보기 >		< 총사상 지위 보기 >	
① 가구대표 응답자	② 배우자	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② 사무종사자 ③ 서비스, 판매 종사자 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⑤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⑥ 단순 노동 종사자 ⑦ 직업군인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① 임금근로자 ② 자영업자 ③ 무급가족종사자	④ 해당 없음 (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⑥ 단순 노동 종사자			
⑦ 손자녀	⑧ 손자녀의 배우자	⑦ 직업군인			
⑨ 증손자녀	⑩ 증손자녀의 배우자	⑧ 전업주부			
⑪ 조부모		⑨ 학생			
⑫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⑩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⑬ 가구대표 응답자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⑭ 기타					

• 조사기준일(2017. 5. 1.) 현재 가구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작성한다.

※ 가구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

- ▶ 주민등록상 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개념이 다르다.
- ▶ 가족 :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
- ▶ 가구 : 가구는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

◆ H. 가구 구성

III 조사표 작성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대표응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준일(2017. 5. 1.) 현재 조사 대상가구에서 취사와 취침을 같이 하는 사람(가구원)중에서 해당 가구의 생활상황을 대표하여 응답해 줄 수 있는 사람 ※ 주민등록상 세대주와는 관계 없음 • 가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 등재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기준일(2017. 5. 1.) 현재 조사대상 가구에서 취사와 취침을 같이 하는 가구원.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라도 취사와 취침을 함께 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포함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text-align: center;"> 가구원에서 제외되는 자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군인(단, 영외거주 군인은 제외) • 취업 또는 학업 등의 이유로 타지역(국내)이나 해외에 상주하는 가족 •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 요양소, 기도원에 수용된 자 • 군입대, 주말부부 등의 사유로 같이 살지 않는 경우 제외
<p>◆ 가구원 번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번은 가구대표응답자이며, 2번부터는 가구대표응답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작성한다. • 가구원번호는 기초조사표 및 사건조사표 표지에 활용된다.
<p>◆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가구원별로 가구대표응답자와의 관계를 보기항목에서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대표응답자일 경우에는 ① 가구대표응답자에 해당 ☞ '14 기타'에는 ①~⑬항 이외의 관계가 있으면 기재
<p>◆ 성 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성별에 표시하여 조사한다.
<p>◆ 실제 생년.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분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으로 정확히 조사한다. ☞ 가구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생년(4자리) · 월(2자리)과 양력 / 음력을 구분하여 기입



◆ 혼인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기준일(2017. 5. 1.) 현재 가족관계등록법 등 법적 상태와는 관계 없이 사실상 혼인상태를 구분하여 조사한다. - 미혼 : 혼인한 경험이 없는 사람 - 배우자 있음 :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사실혼 포함) - 사별이나 이혼 : 배우자의 한쪽이 사망하거나,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현재 독신으로 있는 경우 (재결합이 예상되지 않는 별거 포함)
◆ 직업 관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대표응답자와 가구원의 직업을 “직업 관련 등 보기”항목에서 선택하여 기입한다. ①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또는 기업의 경영자, 고위임원, 부서관리자, 소규모기업의 경영자 등 - 교수, 교사, 학원강사, 예술인, 작가, 연예인, 운동선수 등 특정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하고 사용하는 직업(각 분야 학자 및 연구(보조)원, 전문가 및 준전문가 등) ② 사무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일반 사무원·금융기관, 여행, 숙박업, 기타 고객관련 사무원 등 ③ 서비스, 판매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음식·조리·미용 등 각종 대인서비스·영업직·매장판매직, 방문통신판매원 -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청원경찰, 경호원 등 보안관련 서비스 등, 모델 및 홍보 종사자 등 ④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⑤ 기능원,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금속·기계·세공·음식료·선박 등 각종 기능종사자 또는 물품 제조원 - 장치·기계조작·조립원, 각종 차량운전원 등 ⑥ 단순 노무 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관리 및 경비, 건물 청소, 배달, 단순조립원, 포장원, 제품 운반원 등 단순 노무 ⑦ 직업군인 ⑧ 전업주부 ⑨ 학생 ⑩ 무직/기타(공익근무요원 포함)

<p>◆ 종사상 지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대표 응답자와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를 해당 보기항목에서 선택하여 조사한다. ① 임금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가구 또는 사업체와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 봉급, 일당, 현물 등을 받는 근로자(상용임금 근로자, 임시·일용 근로자) ②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일하는 사람 - 직장이나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지 않는 번역가, 작가, 예술인, 통역사 등의 자유직업인도 포함 ③ 무급가족종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정규 근무시간의 1/3이상 일하는 경우 ④ 해당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 																																
<p>◆ 장애인 복지카드 유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가 있는 사람 중 장애인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파악하여 표시하되 부담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조사한다. ※ 장애가 없는 사람은 체크하지 않는다. 																																
<p>◆ 출신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대표 응답자와 가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만 출신국가를 조사한다. 여기에서는 국적취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p><아시아권></p> <table border="1" data-bbox="426 1220 973 1367"> <tr> <td>01. 중국</td> <td>02. 한국계중국인</td> <td>03. 일본</td> <td>04. 우즈베키스탄</td> </tr> <tr> <td>05. 몽골</td> <td>06. 베트남</td> <td>07. 필리핀</td> <td>08. 타이</td> </tr> <tr> <td>09. 타이완</td> <td>10. 인도네시아</td> <td>11. 방글라데시</td> <td>12. 스리랑카</td> </tr> <tr> <td>13. 파키스탄</td> <td>14. 네팔</td> <td>15. 캄보디아</td> <td>16. 미얀마</td> </tr> <tr> <td>17. 인도</td> <td></td> <td></td> <td></td> </tr> </table> <p><북미권></p> <table border="1" data-bbox="426 1416 973 1448"> <tr> <td>18. 미국</td> <td>19. 캐나다</td> <td></td> <td></td> </tr> </table> <p><유럽권></p> <table border="1" data-bbox="426 1498 973 1530"> <tr> <td>20. 영국</td> <td>21. 독일</td> <td>22. 러시아</td> <td></td> </tr> </table> <p><기타></p> <table border="1" data-bbox="426 1576 973 1608"> <tr> <td>23. 기타</td> <td></td> <td></td> <td></td> </tr> </table>	01. 중국	02. 한국계중국인	03. 일본	04. 우즈베키스탄	05. 몽골	06. 베트남	07. 필리핀	08. 타이	09. 타이완	10. 인도네시아	11. 방글라데시	12. 스리랑카	13. 파키스탄	14. 네팔	15. 캄보디아	16. 미얀마	17. 인도				18. 미국	19. 캐나다			20. 영국	21. 독일	22. 러시아		23. 기타			
01. 중국	02. 한국계중국인	03. 일본	04. 우즈베키스탄																														
05. 몽골	06. 베트남	07. 필리핀	08. 타이																														
09. 타이완	10. 인도네시아	11. 방글라데시	12. 스리랑카																														
13. 파키스탄	14. 네팔	15. 캄보디아	16. 미얀마																														
17. 인도																																	
18. 미국	19. 캐나다																																
20. 영국	21. 독일	22. 러시아																															
23. 기타																																	



- 조사원이 조사 완료 후 가구원의 조사 최종 상태를 아래 보기에서 선택하여 기입

응답 상태	코드	사 유
조사완료	0	해당 가구원의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사건이 있는 경우)를 모두 완료
대리응답	1	일시 부재, 언어문제 등의 이유로 조사가 어려운 가구원을 대신하여 가구대표응답자 등이 조사에 대리 응답함 * 높은 귀가로 면접이 어려운 가구원은 대리 응답을 허용하지 않음
응답불응	2	가구대표 응답자는 조사를 완료했으나, 해당 가구원을 3일 이상 만나 설득했음에도 응답을 거부함
일시부재	3	가구대표 응답자는 조사를 완료했으나, 해당 가구원이 조사기간 동안 여행, 출장, 병원입원 등의 이유로 집에 들어오지 않아 조사를 못 함
응답곤란	4	가구대표 응답자는 조사를 완료했으나, 해당 가구원이 고령, 장애, 언어문제 등의 이유로 조사에 응답하지 못 함
기타	9	만 14세 미만 가구원

◆ 사유코드

I 동네와 이웃 환경

1 작년(2016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주위 환경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3)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 등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4) 기초 질서(무단횡단, 불법 주차자 등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5)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①	②	③	④	⑤
6)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작년(2016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다	①	②	③	④	⑤
3)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왔다	①	②	③	④	⑤
4)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①	②	③	④	⑤
5)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와줄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6)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7) 범죄예방을 위해 순찰을 해야 한다면 이 활동에 참여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3 작년(2016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동네 경찰에 대해 느낀 점을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순찰 활동을 잘 하고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2) 범죄사건이 발생하여 신고하면, 즉시 출동할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3) 범죄사건을 신고하면, 반드시 범인을 잡아줄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 주위 환경 ◆ 동네 사람들 ◆ 경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고 있는 동네의 이웃사람들 간의 관계, 물리적/사회적 환경, 그리고 경찰활동 등에 관한 질문이다. • 동네란 평소 자신이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는 지역으로서 비슷한 유형과 비슷한 가격의 주택가를 말하며, 같은 학교, 교회, 병원, 상가 및 정류장(버스나 지하철)을 공유하는 지역으로서 다른 동네와는 차도나 담(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경찰활동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공무원의 역할과 업무를 말한다.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2016년 연말</u> 살았던 동네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한다.

4 작년(2016년) 한 해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범죄가 증가할 것 같습니까? 감소할 것 같습니까?

항목	매우 감소할 것	약간 감소할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증가할 것	매우 증가할 것
1)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살고 있는 동네(지역)의 범죄	①	②	③	④	⑤

- ◆ 범죄의 증가여부
 - 범죄가 앞으로 증가할 것 같은지, 감소할 것 같은지 응답자의 생각을 묻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의 범죄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범죄수준에 대하여 각각 질문하여 조사한다.
 - 조사시점(2017. 5. 1.) 이후의 범죄발생 증감률을 판단할 때, 작년(2016년) 한해와 비교하여 답하도록 한다.



II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5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 상황별 두려움

- 일상생활 중 제시된 두 가지 상황에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질문하여 조사한다.

6 귀하는 아래의 사람들이 일상생활 중에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 배우자(애인)나 자녀가 없는 경우는 '해당자 없음'에 표시해주세요)

항목	해당자 없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 자신이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X	①	②	③	④	⑤
2) 배우자(애인)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①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두렵다	①	①	②	③	④	⑤

◆ 이타적 두려움

- 일상생활 중에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본인 자신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나 자녀에 관한 것인지를 질문하여 조사한다.

<유의사항>

- 배우자(애인)이나 자녀가 없는 경우 '①해당자 없음'으로 조사한다.



7 귀하는 다음 각 항목의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평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누군가 몰래 내 돈이나 물건을 훔쳐갈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2) 누군가 강제로 내 돈이나 물건을 빼앗아갈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3) 누군가 나를 구타·폭행하여 다치게 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4)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해 내 재산을 잃을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5) 누군가 나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누군가 내 물건이나 재산을 부수거나 못쓰게 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7) 누군가 내 집에 침입할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8) 누군가 나를 쫓아다니거나 전화 등으로 집요하게 괴롭힐까 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⑤

◆ 범죄유형별
두려움

-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유형별로 응답자가 범죄피해를 당할
까 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질문하여 조사한다.

8 귀하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 범죄피해를 당할 소지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2) 누군가 나를 폭행하려 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범죄피해를 당한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피해 결과가 더 심각하고 오래 지속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 범죄 취약성
인식

-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자신이 범죄피해에 노출될 가능성,
방어능력 및 피해결과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를 파악
하려는 문항이다.

9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귀하와 평소에 가깝게 지내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 등)이 다음과 같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항목	있었다	없었거나 모른다
1) 신체 피해	①	②
2) 재산 피해	①	②

◆ 지인의 범죄피해

- 응답자가 평소 가깝게 지내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직장동료 등)이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범죄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나 재산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는 질문이다.

10 귀하는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일주일 평균 며칠 정도 대중교통 수단(버스, 지하철, 기차 등 포함, 단 택시는 제외)을 이용하였습니까?

- ① 일주일에 5일 이상 ② 일주일에 3 ~ 4일
- ③ 일주일에 1 ~ 2일 ④ 거의 또는 전혀 없음

◆ 대중교통수단 이용 빈도

- 응답자가 평소 외출할 때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일주일에 얼마나 이용하는지 질문하여 조사한다.

<유의사항>

-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1 귀하는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저녁 10시 이후 집에 들어갔습니까?

-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 ~ 3일 ③ 일주일에 하루
-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

◆ 늦은 귀가 빈도

- 응답자에게 직장이나 학교 일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인하여 밤 10시 이후에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의사항>

-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늦게 귀가한 경우가 한 달 평균 어느 정도였는지 기입하도록 한다.



12 귀하는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한 달 평균 며칠 정도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갔습니까?

① 거의 매일 ② 일주일에 2 ~ 3일 ③ 일주일에 하루
 ④ 보름에 하루 ⑤ 한 달에 하루 ⑥ 거의 또는 전혀 없음

- ◆ 만취상태의 귀가 빈도
 - 응답자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술에 만취해 집에 들어간 경우가 1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유의사항>
 - 만취상태란 술이 많이 취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 혹은 어떻게 집에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가구대표 응답자용 문항

13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귀하와 가구원이 모두 외출하거나 출근하여 집이 비어 있는 시간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였습니까?

① 거의 비우지 않았음 ② 4시간 미만 ③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④ 8시간 이상 ~ 12시간 미만 ⑤ 12시간 이상

- ◆ 집이 비어있는 시간
 - 응답자와 응답자 가족이 전부 외출하거나 출근하여 집이 비어있는 시간이 하루를 기준으로 보통 몇 시간이나 되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주중에 평균적으로 하루 동안 집이 비어있는 시간을 계산하여 해당 항목에 표시하도록 한다.
- <유의사항>
 - 가구대표 응답자에게만 질문한다.

14 귀하는 자신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 ◆ 자신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
 - 삶의 여러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자신의 생활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려는 문항이다.



15 귀하의 일상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외출할 때 고급스런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평소 유명 브랜드 제품을 즐겨 사용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범죄 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등을 자주 보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사람들과 대화할 때 범죄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종종 재미삼아 위험한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일이 복잡해지면 포기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쉽게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8) 머리 쓰는 일보다 몸으로 하는 일을 선호 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장래에 일어날 일보다는 지금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그리 동경적이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 ◆ **범죄대상으로서 매력성**
 - 응답자가 평소 외출 시 고급스런 복장이나 악세서리 또는 유명 브랜드 제품(의복, 신발, 가방, 장신구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일상생활용품)을 사용하여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 보려는 문항이다.
- ◆ **범죄관련정보에 노출정도**
 - 응답자가 평소 범죄관련정보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지를 알아 보려는 문항으로, 구체적으로 범죄관련 뉴스나 프로그램 또는 범죄사건에 대한 대화의 빈도를 알아보려는 문항이다.
- ◆ **자기통제수준 (5-10)**
 - 응답자의 자기통제수준과 관련된 문항이다.
- <유의사항>
 - 남자의 경우 액세서리에 시계, 안경, 신발 등을 포함시킨다.
 - 질문 5의 "위험한 일"이란 자신 혹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법적인 처벌을 초래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속, 과음(폭음), 도박, 무분별한 성관계(예: 하룻밤 즐기는 것),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포함) 등을 포함한다.



16 귀하는 범죄로부터 자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 도구(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3) 밤에 혼자 다니다가 무서워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4) 범죄피해를 당할까 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피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5) 밤에 일이 있어도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서 그 일을 미룬다	①	②	③	④	⑤
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2~3일 이상 집을 비울 때 이웃집에 배달라고(배달된 신문이나 우유 치우기 등)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 ◆ 범죄예방 안전 조치 여부
- 응답자가 범죄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갖 추거나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Ⅲ 배경 문항

◆ 가구대표 응답자용 문항

17 귀하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_____년 _____개월

- ◆ 거주기간**
- 가구대표응답자에게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얼마동안 거주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
- ◆ <유의사항>**
- 같은 동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사한 경우는 현재 살고 있는 동네로 봅니다.
 - 가구대표응답자에게만 질문
 -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조사한다.

◆ 가구대표 응답자용 문항

18 최근 5년 이내(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 _____회 ② 없다

- ◆ 이사 경험**
- 가구대표응답자에게 최근 5년 동안 몇 번이나 이사를 했는지 물어 조사한다.
-
- ◆ <유의사항>**
- 가구대표응답자에게만 질문
 - 최근 5년 이내(2012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이사 경험을 물어보는 것으로 기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 가구대표 응답자용 문항

19 가무원 가운데 현재 사는 집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있다 → 응답 후 **19-1** 번으로 ② 없다 → 응답 후 **20** 번으로

19-1 현재 집에서 영업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상호나 간판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영업자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가구대표응답자나 가구원 가운데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 가령, 가게는 1층이고 2층에서 살고 있는 경우 등)
◆ 상호나 간판 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영업을 할 경우, 상호나 간판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대표 응답자에게만 질문

◆ 가구대표 응답자용 문항

20 현재 사시는 집의 소유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기 집

④ 월세(사글세)

② 전세

⑤ 무상

③ 보증부 월세

◆ 주택 소유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대표응답자의 주택소유(점유) 형태를 물어보고 조사한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대표응답자에게만 질문한다. ✓ 자기집 : 소유권이전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가구대표 응답자나 가구원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형태 ✓ 전세 : 남의 집을 임차하여 집주인에게 정해진 금액을 임차기간 동안 이자 없이 맡기고 이사 갈 때 되돌려 받는 형태 ✓ 보증부 월세 : 집주인에게 임차기간 동안 일정 보증금을 맡기고 매월 주택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형태 ✓ 월세 : 집주인에게 매월 주택의 임차료를 지불하는 형태 ✓ 기타 : 무상주택(조사대상가구의 가구대표응답자나 가구원 소유의 집이 아니고 타 가구를 형성하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의 소유 주택으로 주택임차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사는 경우)과 사택(가구대표응답자나 가구원이 근무하는 관공서나 회사 소유의 주택으로 소속 직원에게 전혀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관리비 정도의 실비를 받고 임대한 경우)이 해당



2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예시: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등 포함)

① 안 받았음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4년제 미만) ⑤ 대학(교)(4년제 이상) ⑥ 대학원 이상

◆ 최종학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의 최종학력을 물어보고 조사한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은 현재 학력 상태로 조사하고, 중퇴나 퇴학은 중퇴나 퇴학 당시의 학력을 조사하고, 졸업은 최종 학력을 조사한다. • (예시: 고등학교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휴학 등을 포함한다)

◆ 가구대표 응답자용 문항

22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귀 가구의 세금 공제 전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① 월평균 100만 원 미만 ② 월평균 100 ~ 200만 원 미만
 ③ 월평균 200 ~ 300만 원 미만 ④ 월평균 300 ~ 400만 원 미만
 ⑤ 월평균 400 ~ 500만 원 미만 ⑥ 월평균 500 ~ 600만 원 미만
 ⑦ 월평균 600 ~ 700만 원 미만 ⑧ 월평균 700 ~ 1,000만 원 미만
 ⑨ 월평균 1,000만 원 이상

◆ 월평균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대표응답자에게 가구 전체의 월평균 총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해당 소득구간에 체크하여 조사한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대표응답자에게만 질문 • 총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모두 더한 소득으로 세금을 공제하기 이전의 금액을 기입하도록 한다.



IV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겪은 피해 경험

* 문항 23번부터 37번까지는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피해 경험을 기억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각 문항마다 방법과 장소 등의 다양한 예시들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질문과 함께 예시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피해 경험이 있었는지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크리닝 질문 <공통 유의사항>

- 문항 23번 문항부터 30번 문항까지는 범죄피해경험에 대한 스크리닝 질문으로 사건조사표를 기입하기 위한 사전확인 문항이고, 문항 31번 문항부터 37번 문항까지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특별주제 문항들이다. 문항 31번 문항부터 37번까지는 기초조사표에서는 피해경험이 있더라도, 사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문항 23번 문항부터 30번 문항까지는 범죄피해경험 스크리닝 질문은 각 문항마다 방법과 장소 등의 다양한 예시들을 통해 응답자의 피해경험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반드시 예시내용 전달에 집중해야 한다. 다만, 예시내용을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기억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당 예시에 대한 범죄피해경험만으로 한정하는 일은 없도록 한다.
- 범죄피해경험 스크리닝 질문에서는 반드시 조사가원이 응답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응답자의 응답을 조사원이 기입한다.
-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23번(속임관련) 문항 및 26번(손상관련) 문항을 제외하고, 스크리닝 질문(24,25,27~30번)을 듣고 난 후 만일 '㉔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 피해경험의 회상을 자극하기 위한 여덟 개의 스크리닝 문항들을 하나씩 질문하면서, 이미 언급한 사건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뒤이은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된다는 내용을 상기시켜주고, 각 스크리닝 문항응답에서 '㉑ 있었다'고 할 경우, 앞서 이미 언급한 사건과는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범죄피해 횟수로 카운트해야 한다.
- ☞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
 - 사건발생 장소, 시간, 가해자, 범행 수법이 모두 동일할 경우, 사건발생 장소와 시간은 다르지만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범죄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경우는 동일한 사건으로 본다.

23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속임(사기)으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까?

예시

- ①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여 보냄
- ②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
- ③ 누군가 돈을 값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값싸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감
- ④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
- ⑤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
- ⑥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 ⑦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 ⑧ 기타의 사기(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① 있다 → ____건 ② 없었다

◆ 속임 관련

-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응답자가 누군가에게 속임이나 사기를 당한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고, 몇 번(사건 횟수)이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당할뻔한 경험은 제외된다.
- 조사원은 어떻게 속임(사기)을 당할 수 있는지 각각의 예시를 정확히 읽어주면서 하나의 예시마다 피해경험 여부를 바로 확인하도록 한다.
- * 예시1번의 내용은 피싱(phishing)의 경험으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가장해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넷사이트에서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일부 또는 전체를 입력하여 돈을 빼가는 등의 피해로 단순히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만 유출된 경우는 제외된다
- * 예시2번의 내용은 팜밍(pharming)의 경험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거찾기’ 또는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금융회사 등의 정상적인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하여도 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재산상의 피해를 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 예시3번의 실제 사례 : 산악회에서 만나 사귀던 50대 여성회원으로부터 5천 2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연합뉴스, 2016.11.18.).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고액의 이자를 주겠다고 돈을 빌린 후 도주한 사례(뉴스1, 2017.03.28)
- * 예시4번부터 예시7번까지는 온라인뿐 아니라 길거리 상점 등의 오프라인에서의 피해 사실도 포함됨을 알려줘야 한다.
- * 예시7번까지 피해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예시내용이외의 또 다른 속임의 피해경험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가령, 스미싱(smishing)과 같이 ‘무로쿠 폰제공’, ‘돌잔치 초대장’, ‘민원접수’ 등의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셜결제 된 경험 있는지 확인한다.
- ☞ 주요 질의사항 가운데 사기(속임) 해당 질문 검토(p.139)
- 피해사실이 있으면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해당되는 피해사건들을 회상하게 하여, 해당 피해사건의 총 횟수를 기입한다.



24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물건을 도둑맞거나 빼앗긴 경험 또는 그럴 뻔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 예시
- ① 현금, 수표, 상품권 등
 - ②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 ③ 지갑, 핸드백, 가방
 - ④ 개인 휴대 물품(노트북, 휴대전화,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등)
 - ⑤ 자전거 혹은 그 부품
 - ⑥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 ⑦ 자동차 부품(내비게이션, 타이어, 타이어 휠캡, 카스테레오, 위성라디오 등)
 - ⑧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
 - ⑨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 ⑩ 그 외 다른 물건

① 있었다 → ____건

② 없었다

◆ 물건 관련

-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응답자가 돈이나 물건을 도둑 맞거나 빼앗긴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문항으로 2가지 유형의 피해경험이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2가지의 피해 경험 모두 실제로 당하지는 않았지만 당할 뻔한 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미수까지 포함하여 도난피해 경험이 몇 번(사건 횟수)이나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이다.
- 조사원이 예시를 천천히 읽으면서 어떤 물품을 도난당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 예시된 물품 이외에도 없어졌거나 빼앗긴 경험이 있었는지 질문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 한 번이라도 피해사실이 있으면,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해당 피해사건(미수사건 포함)을 회상하도록 하여, 해당 피해사건의 총 횟수를 물어보고 기입한다.

25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누군가 문이나 창문을 열거나, 자물쇠나 방범창을 절단하여 귀하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왔거나 들어올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_____건 ② 없었다

◆ 침입 관련

-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주거 침입을 당한 적이 있는지 혹은 당할 뻔한 적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 누군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등의 피해를 경험했거나 당할 뻔 했다면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 포함)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유의사항>

-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 준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 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이때,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조사표의 지시문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앞의 문항 -번, -번 문항에서 말씀하신 사건 말고 또 다른 사건인지’를 질문하여 확인한다. 가령, 문항 24번과 문항 25번 문항의 경우에서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의 문항 24번에서 응답하신 피해 경험에 대한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여 확인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새롭게 피해 횟수로 카운트하지 않으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수로 집계한다.
- ☞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
 - 사건발생 장소, 시간, 가해자, 범행 수법이 모두 동일할 경우, 사건발생 장소와 시간은 다르지만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범죄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경우는 동일한 사건으로 본다.
- 응답자가 주거침입을 당한 적이 ‘① 있었다’고 응답했을 경우, 사건발생 당시 응답자가 그 집의 소유주나 세입자였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건 중 그 발생장소가 본인의 거주 장소가 아니라면(가령, 부모님 댁 방문 시 사건경험이나 휴가철 숙소에서의 경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응답할 필요가 없다. 다만 조사응답자가 소유하고 있는 별장 등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을 경우는 포함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26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누군가 고의로 귀하와 가구원의 재산이나 물건을 부수거나 못 쓰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 예: 누군가 귀하의 집 창문 또는 집 밖에 놓아둔 물건이나 자동차에 손상을 입힌 적이 있다.)

① 있었다 → _____건 ② 없었다

◆ 손상 관련

-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누군가 응답자의 재산이나 물품에 손상을 입힌 적이 있는지, 있었다면 몇 번이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 누군가에 의한 물품손상 피해를 경험하였다면,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이 때 손상을 당한 뺀 경우(미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유의사항>

-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25**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새롭게 피해 횟수로 카운트하지 않으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집계한다.
- 응답자가 물품손상피해를 당한 적이 '① 있었다'고 응답했을 경우, 응답자의 소유물이었는지를 확인하고, 만일 아닐 경우에는 조사에서 제외해야 한다.

III
조사표
작성
요령



27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장소에서 귀하는 폭행이나 위협(협박) 또는 도둑을 맞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 예시
- ① 우리 집 또는 그 근처
 - ② 친척, 친구, 이웃집이나 그 근처
 - ③ 직장이나 학교
 - ④ 시장, 쇼핑센터, 식당, 은행 등
 - ⑤ 체육관, 극장, 놀이공원, 등산로(산책로) 등
 - ⑥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 ⑦ 거리, 주차장, 승용차 등 그 밖의 장소

① 있었다 → _____ 건 ② 없었다

◆ 장소 관련

- 작년(2016) 한 해 동안, 돈이나 물품을 잃어버렸거나 빼앗겼거나 누군가로부터의 위협이나 폭행피해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는 문항이다.
- 이 문항은 다양한 장소의 예시들을 보면서 앞서 언급한 사건 이외의 재산 및 신체피해 사실을 기억해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돈이나 물품 도난 뿐만 아니라 위협이나 폭행 피해경험도 포함되어 있다.
- 만일,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피해경험이 회상되었을 경우,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까지 포함하여)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유의사항>

< 장소별 범죄피해 실제 사례 >

- 사례 1: 주택가 골목길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길을 가던 70대 노부부를 무차별 폭행(광주방송, 2017.03.07.)
- 사례 2: 한 택시기가 술에 취한 승객을 폭행하고 도로에 유기함(뉴시스, 2017.03.07)
- 사례 3: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승강장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여성들을 상대로 소매치기로 지갑을 훔침(아시아 뉴스통신, 2017.02.20.)
- 사례 4: 피해자를 지하철부터 미행해 서울 광장 집회 현장에서 신문으로 주변 시선을 가린 뒤 소매치기를 시도(중앙일보, 2017.03.19.)



<유의사항>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즉, 앞의 24, 25, 26번 문항에서 말씀하신 피해경험과는 다른 경험이어야 함을 설명한다.
- 만일, 본 질문에 ‘㉠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25, 26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 없었다’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 만일, 응답자가 피해를 당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 있었다’라고 응답했다면, 가해자가 응답자에게 전화나 문서 등을 통한 위협이었던지 아니면 직접적인 대면 상황에서 신체적 위협을 경고하는 것이었던지 확인하여 전화나 문서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은 제외시킨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28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귀하는 아래에 예시한 방법으로 폭행이나 위협(협박)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 전화로 위협을 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 | |
|--------|--|
| 예
시 | ① 칼, 흉과 같은 무기
② 야구방망이, 가위, 프라이팬, 막대기
③ 돌이나 병을 던짐
④ 몸을 붙잡거나 치거나 목을 조름
⑤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⑥ 귀하 앞에서 위협함
⑦ 그 외 다른 폭행, 위협(협박) |
|--------|--|

① 있었다 → _____ 건 ② 없었다

◆ 방법 관련

-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위협이나 협박, 폭행을 당하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다.
- 이 문항은 앞의 27번 문항에서 응답자가 실제 피해경험은 있으나 위협, 협박, 폭행을 당하거나 혹은 당할 뻔한 기억을 되살리지 못해서 응답을 못한 경우, 다양한 도구나 방법들에 대한 예시를 들으면서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문항이다.
- 만일,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피해경험이 회상되었을 경우, ‘㉠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 포함)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유의사항>

-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즉, 앞의 24 25 26 27 번 문항에서 말씀하신 사건은 제외됨을 설명한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25 26 27 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새 ② 없었다’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 실제 사건 발생 상황에서 가해자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무기나 물건을 가지고만 있었다라도 응답하도록 한다. 여기서의 무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이 피해 상황에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전달한다. 또한 해당 예시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소개하며 피해경험이 생길나도록 해야 한다.
 - 예시 ④ : 몸을 붙잡거나 목을 조르는 것 뿐 아니라 팔, 다리, 머리등의 신체 부위를 때리거나 차거나 하는 등의 관련된 예를 포함하여 전달한다.
 - 예시 ⑤ : 강요된 혹은 원치 않은 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밀착시키는 행위, 키스, 성행위를 시도하려는 행위 등의 피해경험으로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빈번하게 발생함.
 - 예시 ⑥ : 대면 상황에서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는 등의 신변 협박이나 물품 등을 빼앗기 위해 위협하는 등의 피해
- < 실제 사례 모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도구가 무기로 사용된 경우 >

사례 1: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공구로 위협하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사례(전라일보, 2017.03.08.)

사례 2: 마을회관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웃을 깨진 소주병으로 위협후 협박 및 폭행을 가한 사례(광주매일신문, 2017.02.21.)

사례 3: 말을 듣지 않는다며 초등학교 4학년 손녀딸을 밥상 나무 받침대로 수차례 폭행한 사례(연합뉴스, 2017.03.29.)

사례 4: 지하철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공업용 커터칼을 이용해 20대 여성을 위협한 사례(부산일보, 2016.02.28)
- 응답자에게 ‘전화로 위협한 경우는 제외’라는 내용을 읽어 줄 필요는 없지만, 만일 응답자가 위협을 당한 적이 ‘①있었다’라고 응답했다면 가해자로부터 전화나 문서 등을 통한 위협이었는지 아니면 직접적인 대면 상황에서 신체적 위협을 경고 받은 것이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전화나 문서를 통한 간접적인 경험은 제외시키고 응답하도록 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29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피해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 부터 도둑, 폭행, 위협 또는 괴롭힘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 예시**
- ① 직장 동료나 학교 선후배
 - ② 친구, 애인 또는 이웃
 - ③ 가족이나 친척
 - ④ 그 밖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

① 있었다 → _____ 건 ② 없었다

◆ 지인 관련

-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아는 사람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예시를 통해 피해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다. 여기에서는 돈이나 물품이 없어졌거나 빼앗기는 등의 물품도난, 폭행, 위협, 성폭력 등 이미 언급된 범죄유형들과 괴롭힘이 모두 포함된다.
- 여기에서 의미하는 괴롭힘이란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특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속적·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유무형의 심리적 위태행위로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성적 농담 등의 포함).
- 만일,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피해경험이 회상되었을 경우,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 포함)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가족, 친구와 같이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을 시작하기 전 "사람들은 보통 아는 사람들에게 당한 피해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주변사람들로부터 물건이나 돈을 도난당했거나 폭행, 위협 혹은 괴롭힘을 당한 적은 없었는지 확인한다.

< 아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피해 사례 >
 사례 1: 알고 지내던 여중생을 술에 취하게 만든 후 집단 성폭행한 10대 사례(뉴스1, 2017.03.26.)
 사례 2: 의붓동생을 인질로 잡고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한 20대 새터민 사례(일요서울, 2017.02.21.)

- 여기에서는 직장 내 폭력이나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같은 피해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피해사실에 대한 비밀유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하지만, 교육(훈육)목적의 체벌은 포함되지 않는다.
-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즉, 앞의 24 25. 26 27 28 번 문항에서 말씀하신 사건은 제외됨을 설명한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25. 26 27 28 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 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이 항목에서는 ‘② 없었다’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나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	--

30 강제적이며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① 낯선 사람
시	② 조금 아는 사람
	③ 잘 아는 사람

① 있었다 → _____ 건 ② 없었다

◆ 성추행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문항이다. • 이 문항의 경우 28 29 번 문항에서 성폭력 경험에 대해 응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해자 유형별로 다시 한 번 질문함으로써 피해경험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다. • 만일, 이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관련 피해경험이 회상되었을 경우, ‘① 있었다’에 표시하고, 몇 번(미수 포함)이나 있었는지 기입한다.
----------	--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문항의 경우 응답을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조사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 응답자에게 누구나 강요된 혹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밀착시키는 행위, 키스, 성행위를 시도하려는 행위 등에 관한 이야기는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함께 공감하며 피해 사실에 대한 비밀유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	--



<유의사항>

-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범죄피해경험에 대해서만 응답되도록 응답자에게 계속하여 상기시켜 준다.
- 질문을 시작할 때, 응답자에게 반드시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라는 내용을 상기시켜준다. 즉, 앞의 24 25 26 27 28 29 번 문항에서 말씀하신 사건은 제외됨을 설명한다.
- 만일, 본 질문에 ‘① 있었다’고 응답할 경우, 해당 사건이 24 25 26 27 28 29 번 문항에서 이미 피해횟수로 기록된 사건과 다른 사건인지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만일 이미 언급한 사건과 동일사건일 경우 ‘② 없었다’로 조사하며, 다른 사건일 경우에만 새로운 피해 횟수로 조사한다.
- 질문을 듣고 난 후 만일 ‘② 없었다’고 응답할 경우, 응답자에게 실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당할 뻔한 적은 없었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V 난폭/보복운전 경험 관련

31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차량(오토바이 포함)을 운전하신 경험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실제 운전경력 _____년 → 응답 후 31-1 번으로
- ② 없었다 → 응답 후 32 번으로

31-1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운전한 경험이 있다면 하루 평균 얼마나 운전하셨습니다?
 1) 월~금: ()시간 2) 토~일: ()시간

31-1-1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이나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단속된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었습니까?
 ① 있었다 → 단속경험 총 _____건 ② 없었다



31-1-2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운전 중에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것 중 자신의 경험과 가장 비슷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항목	전혀 없었다	적은 편이었다	그저 그랬다	많은 편이었다	매우 많았다
1) 속도를 무시한 채 운전하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2) 신호를 무시한 채 운전하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3) 차선변경을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4) 중앙선 침범을 해서라도 앞질러 가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5)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제동을 하고 싶었다	①	②	③	④	⑤

32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버스나 택시 등의 교통수단(기차와 지하철 제외)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얼마나 되었습니까?

1) 월~금 ()시간 2) 토~일 ()시간

◆ 운전 경험

- 2016년 동안 차량 혹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경험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 여기서의 차량은 운전면허가 필요한 차량으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등의 원동기장치자전거, 견인형 특수자동차 등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 만일, 2016년 동안 운전한 경험이 '① 있었다'면 실제 운전 경력을 직접 기입하도록 한다.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 이라고 기입한다.

◆ 주행 시간

- 2016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몇 시간이나 운전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으로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직접 기입한다. 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기입한다.



◆ 단속된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한 해 동안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불법 U턴, 불법유턴 등의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경험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문항이다. 만일, 2016년 동안 단속된 경험이 '① 있었다'면 총 몇 번인지 직접 기입하도록 한다.
◆ 운전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전성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경험과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하도록 한다.
◆ 버스나 택시 이용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한 해 동안 기차와 지하철을 제외하고 버스와 택시 등 도로 상에서 운전하는 차량으로 응답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으면서 차량을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시간은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여 하루 평균으로 기입하며 만일, 1시간 미만이라면 1시간이라고 기입한다.

- ▣ 난폭운전이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소음발생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특정인과의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다음 문항들은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전경험이 있는 경우는 직접 운전한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운전경험이 없는 경우는 차량으로 이동 중의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33 귀하는 운전 중(혹은 차량을 이용한 이동 중)에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인해 다치거나 하는 등의 피해를 당할까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항목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
1) 난폭운전피해	①	②	③	④	⑤
2) 보복운전피해	①	②	③	④	⑤

◆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 두려움

-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는지 질문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 난폭운전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소음발생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특정인과의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34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운전 중에(혹은 차량으로 이동 중에) 다른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실제로 귀하가 사고가 날 뻔 했거나 실제로 사고가 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됩니까?

- ① 있었다 → _____ 건 → 응답 후 **34-1** 번으로
- ② 없었다 → 응답 후 **35** 번으로

34-1 다음은 다른 차량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것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항목	보기
1) 피해를 당하게 된 난폭 운전의 구체적 행위	①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② 차량들 사이로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급차로 변경 ③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 ④ 앞차 뒤에 바짝 붙어 반복적으로 경적 울리는 행위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2) 구체적인 피해경험 (중복 응답)	① 정신적 피해(두려움, 공포, 화남) ② 신체적 피해(가벼운 신체 피해 포함) ③ 긁힘이나 파손 등의 차량피해 ④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3) 피해 당시 시간	① 새벽(03시-06시 전) ② 아침(06시-09시 전) ③ 오전(09시-12시 전) ④ 한낮(12시-15시 전) ⑤ 오후(15시-18시 전) ⑥ 저녁(18시-21시 전) ⑦ 밤(21시-24시 전) ⑧ 심야(24시-03시 전) ⑨ 잘 모르겠음
4) 피해 장소	① 고속도로 ② 국도 ③ 시내 일반도로 ④ 시내 자동차전용도로 ⑤ 주택가 이면도로 ⑥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⑦ 잘 모르겠음
5) 피해를 준 난폭운전 차량 종류	① 자가용 승용차(RV 등 포함) → <input type="checkbox"/> 국산소형 <input type="checkbox"/> 국산중대형 <input type="checkbox"/> 수입소형 <input type="checkbox"/> 수입중대형 ② 영업용 승용차(택시 등) ③ 버스 ④ 화물차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⑥ 잘 모르겠음



◆ 난폭운전 피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폭운전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소음발생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해당 문항은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 피해당한 난폭운전의 구체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한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고 응답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하고 직접 기입하도록 한다.
◆ 구체적인 피해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문항으로 두려움이나 공포, 화남 등의 정신적 피해나 신체 손상 등의 신체적 피해, 차량 파손 등의 재산 피해가 있는 경우 응답하도록 한다. 본 문항은 중복으로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피해경험이 있을 경우, 모두 기입할 수 있도록 한다.
◆ 피해 당시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 시간을 응답하도록 한다.
◆ 피해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폭운전의 구체적 피해 장소를 응답하도록 한다. 여기서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이며 국도란 일반국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n번 국도' 등의 이름이 붙여진 도로를 의미한다. 한편,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며 주택가 이면도로란 주택가에 있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를 의미한다.
◆ 피해를 준 난폭운전 차량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난폭운전을 한 차량의 종류를 응답하도록 한다. 자가용 승용차는 더 세부적으로 국산과 수입,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한다. 소형은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것이고, 중대형은 배기량이 1,600cc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영업용 승용차는 택시, 운전면허학원 차 등이 해당된다.



35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난폭운전을 하는 차량을 목격하신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됩니까?

- ① 있었다 → _____ 건 → 응답 후 **35-1** 번으로
 ② 없었다 → 응답 후 **36** 번으로

35-1 다음은 난폭운전 차량을 목격한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목격한 경험 가운데 가장 위험한 형태의 난폭운전을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항목	보기
1) 목격한 난폭운전의 구체적 행위	①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② 차량들 사이로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급차로 변경 ③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 ④ 앞차 뒤에 비뺨 붙어 반복적으로 경적 울리는 행위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2) 목격 시간	① 새벽(03시-06시 전) ② 아침(06시-09시 전) ③ 오전(09시-12시 전) ④ 한낮(12시-15시 전) ⑤ 오후(15시-18시 전) ⑥ 저녁(18시-21시 전) ⑦ 밤(21시-24시 전) ⑧ 심야(24시-03시 전) ⑨ 잘 모르겠음
3) 목격 장소	① 고속도로 ② 국도 ③ 시내 일반도로 ④ 시내 자동차전용도로 ⑤ 주택가 이면도로 ⑥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⑦ 잘 모르겠음
4) 난폭운전 차량 종류	① 자가용 승용차(RV 등 포함) → <input type="checkbox"/> 국산소형 <input type="checkbox"/> 국산중대형 <input type="checkbox"/> 수입소형 <input type="checkbox"/> 수입중대형 ② 영업용 승용차(택시 등) ③ 버스 ④ 화물차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⑥ 잘 모르겠음



◆ 난폭운전 목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폭운전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신호·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소음발생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목격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는 문항이다. • 피해 경험이 아닌 목격 경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한다.
◆ 목격한 난폭운전의 구체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격한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고 응답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하고 직접 기입하도록 한다.
◆ 목격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폭운전으로 인한 목격 시간을 응답하도록 한다.
◆ 목격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폭운전의 구체적 목격 장소를 응답하도록 한다. 여기서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이며 국도란 일반국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n번 국도' 등의 이름이 붙여진 도로를 의미한다. 한편,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며 주택가 이면도로란 주택가에 있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를 의미한다.
◆ 난폭운전 차량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폭운전을 목격한 차량의 종류를 응답하도록 한다. • 자가용 승용차는 더 세부적으로 국산과 수입,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한다. 소형은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것이고, 중대형은 배기량이 1,600cc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 영업용 승용차는 택시, 운전면허학원 차 등이 해당된다.



36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귀하 차량에 대한 보복운전으로 실제로 사고가 날 뻔 했거나 실제로 사고가 나는 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됩니까?

- ① 있었다 → _____ 건 → 응답 후 **36-1** 번으로
- ② 없었다 → 응답 후 **37** 번으로

36-1 다음은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경우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항목	보기
1) 피해당한 보복운전의 구체적 행위	①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② 급정지로 막아 세워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③ 차량을 이용해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려 차로를 급변경하는 행위 ④ 뒤쫓아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2) 구체적인 피해경험 (중복 응답)	① 정신적 피해(두려움, 공포, 화남) ② 신체적 피해(가벼운 신체 피해 포함) ③ 긁힘이나 파손 등의 차량피해 ④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3) 피해 당하기전의 상황	① 정체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서행 중 ② 다른 차량들이 계속 내 차량 앞으로 들어옴 ③ 갑박이를 켜지 않고 상대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 ④ 상대 차량 차선으로 급하게 차선 변경 ⑤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 ⑥ 상대 차량이 차선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양보 안함 ⑦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경적을 울렸거나 상향등을 켜 ⑧ 교통의 흐름에 맞게 운행 중 ⑨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4) 피해 당시 <u>귀하의</u> 차종	① 자가용 승용차(RV 등 포함) → <input type="checkbox"/> 국산소형 <input type="checkbox"/> 국산중대형 <input type="checkbox"/> 수입소형 <input type="checkbox"/> 수입중대형 ② 영업용 승용차(택시 등) ③ 버스 ④ 화물차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5) 피해 시간	① 새벽(03시-06시 전) ② 아침(06시-09시 전) ③ 오전(09시-12시 전) ④ 한낮(12시-15시 전) ⑤ 오후(15시-18시 전) ⑥ 저녁(18시-21시 전) ⑦ 밤(21시-24시 전) ⑧ 심야(24시-03시 전) ⑨ 잘 모르겠음
6) 피해 장소	① 고속도로 ② 국도 ③ 시내 일반도로 ④ 시내 자동차전용도로 ⑤ 주택가 이면도로 ⑥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⑦ 잘 모르겠음



항목	보기
7) 보복운전 차량의 차종	① 자가용 승용차(RV 등 포함) → □국산소형 □국산중대형 □수입소형 □수입중대형 ② 영업용 승용차(택시 등) ③ 버스 ④ 화물차 ⑤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⑥ 잘 모르겠음
8) 보복운전자의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③ 잘 모르겠다
9) 보복운전자의 연령	① 20-30대 ② 40-50대 ③ 60대 이상 ④ 잘 모르겠다

- ◆ 보복운전 피해 경험
 -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특정인과의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자동차 등이 이용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는 문항이다.

- ◆ 피해당한 보복운전의 구체적 행위
 - 경험한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고 응답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를 선택하고 직접 기입하도록 한다.

- ◆ 구체적인 피해 경험
 -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 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문항으로 두려움이나 공포, 화남 등의 정신적 피해나 신체 손상 등의 신체적 피해, 차량 파손 등의 재산 피해가 있는 경우 응답하도록 한다.
 - 본 문항은 중복으로 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피해경험이 있을 경우, 모두 기입할 수 있도록 한다.

- ◆ 피해당하기 전 상황
 - 보복운전 피해를 당하기 전 상황에 대한 문항으로 응답자의 기준에서 응답하도록 한다.

- ◆ 피해 당시 귀하의 차종
 - 귀하의 차량이란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당시 이용했던 차량 종류를 기입하면 된다.
 - 피해 당시 차종을 하나만 응답하도록 한다.
 - 자가용 승용차는 더 세부적으로 국산과 수입,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한다. 소형은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것이고, 중대형은 배기량이 1,600cc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 영업용 승용차는 택시, 운전면허학원 차 등이 해당된다.

- ◆ 피해 시간
 - 보복운전으로 인한 피해 당시 시간을 응답하도록 한다.



<p>◆ 피해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복운전의 구체적 피해 장소를 응답하도록 한다. 여기서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이며 국도란 일반국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n번 국도' 등의 이름이 붙여진 도로를 의미한다. 한편,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며 주택가 이면도로란 주택가에 있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를 의미한다.
<p>◆ 보복운전 차량 차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복운전을 한 차량의 종류를 응답하도록 한다. • 자가용 승용차는 더 세부적으로 국산과 수입,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한다. 소형은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것이고, 중대형은 배기량이 1,600cc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 영업용 승용차는 택시, 운전면허학원 차 등이 해당된다.
<p>◆ 보복운전자의 성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판단했을 때 보복운전자의 성별을 응답하도록 한 문항으로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다.
<p>◆ 보복운전자의 연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가 판단했을 때 보복운전자의 대략적인 연령대를 응답하는 것으로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를 선택한다.



37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다른 차량에 대한 보복운전을 하는 차량을 목격하신 적이 있다면 몇 번이나 됩니까?

- ① 있었다 → _____ 건 → 응답 후 **37-1** 번으로
 ② 없었다 → 다음 항목으로 이동

37-1 다음은 보복운전 차량을 목격한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형태의 보복운전 이었던 경우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항목	보기
1) 목격한 보복운전의 구체적 행위	①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② 급정지로 막아 세워 욕설을 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③ 차량을 이용해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려 차로를 급변경하는 행위 ④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2) 목격 시간	① 새벽(03시~06시 전) ② 아침(06시~09시 전) ③ 오전(09시~12시 전) ④ 한낮(12시~15시 전) ⑤ 오후(15시~18시 전) ⑥ 저녁(18시~21시 전) ⑦ 밤(21시~24시 전) ⑧ 심야(24시~03시 전) ⑨ 잘 모르겠음
3) 목격 장소	① 고속도로 ② 국도 ③ 시내 일반도로 ④ 시내 자동차전용도로 ⑤ 주택가 이면도로 ⑥ 기타 (구체적으로 : _____) ⑦ 잘 모르겠음
4) 보복운전 차량 종류	① 자가용 승용차(RV 등 포함) → <input type="checkbox"/> 국산소형 <input type="checkbox"/> 국산중대형 <input type="checkbox"/> 수입소형 <input type="checkbox"/> 수입중대형 ② 영업용 승용차(택시 등) ③ 버스 ④ 화물차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⑥ 잘 모르겠음

◆ 보복운전 목격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복운전은 도로 위에서 특정인과의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자동차 등을 이용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간접적인 목격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는 문항이다. • 피해 경험이 아닌 목격 경험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한다.
◆ 목격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복운전 차량을 목격한 시간을 응답하도록 한다.
◆ 목격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복운전 차량의 구체적인 목격 장소를 응답하도록 한다. 여기서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이며 국도란 일반국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n번 국도' 등의 이름이 붙여진 도로를 의미한다. 한편,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이며 주택가 이면도로란 주택가에 있는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좁은 도로를 의미한다.
◆ 보복운전 차량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복운전 차량의 종류를 응답하도록 한다. • 자가용 승용차는 더 세부적으로 국산과 수입, 소형과 중대형으로 구분한다. 소형은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 것이고, 중대형은 배기량이 1,600cc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 영업용 승용차는 택시, 운전면허학원 차 등이 해당된다.

V 조사원 확인 사항

* 이 페이지부터는 조사원이 직접 적어 넣습니다.

1. 점검 항목						
관련 문항	1. 피해 경험 여부		2. 일반피해 수	3. 상습피해 수	4. 사건조사표 수 (상습피해는 1건만 작성)	
23 번 속임 관련	① 없었다	① 있었다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4 번 물건 관련	① 없었다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5 번 침입 관련	① 없었다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6 번 손상 관련	① 없었다	① 있었다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7 번 장소 관련	① 없었다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8 번 방법 관련	① 없었다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29 번 지인 관련	① 없었다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30 번 성추행 관련	① 없었다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건	_____ 부
총 피해 경험 수	① 있었다(미수 포함) _____ 건		총 사건조사표 수		_____ 건	_____ 부



◆ 조사원
체크사항

- 조사원은 기초조사표의 응답이 모두 끝난 경우, 피해경험 체크리스트를 점검하여 작성한다. 만일, 자기기입식으로 응답을 한 경우 해당 응답자에게 범죄피해경험 스크리닝 질문에 대해 별도의 면접과정을 거쳐 응답을 확인해야 한다.
- 본 체크리스트는 기초조사표의 스크리닝 질문 23번~30번 문항에서 응답자가 회상한 사건들의 횟수를 정리하는 것이다. 본 체크리스트는 아래의 3 단계를 거쳐, 각 개인이 최종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건조사표 총 수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1단계] 피해 경험 수의 결정방법

- ① 범죄피해경험 관련문항의 피해 경험수를 옮겨 적습니다.
- ② 점검항목에서 2개 이상의 관련문항에 표시된 경우 동일한 피해경험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강도가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물건을 훔친 경우 3개 문항에 표시 될 수 있으나, 동일 피해경험인 경우 한 건으로 표시합니다.
- ③ 문항별 피해경험여부 건수를 합산하여 총 피해경험 수에 기입합니다.
- ④ 총 피해경험수와 응답자가 기억하는 피해경험수를 확인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 조사표를 재검토합니다.

[2단계] 상습피해여부의 확인 및 결정방법

- * 상습피해란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인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사건조사표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한 건만 작성합니다.

< 상습피해 실제 사례 >

- 사례 1: 동네 영세상인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술값과 이용대금 등을 갈취한 조폭사례(NSP통신, 2017.03.20.)
- 사례 2: 규율을 어기거나 암기를 못 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생들을 8차례에 걸쳐 학대한 보육원장 사례(연합뉴스, 2016.11.21.)
- 사례 3: 판매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직원들을 수시로 폭행한 휴대폰 판매점주(스포츠헤럴, 2016.12.08.)

◆ 조사원
체크사항

- ① 문항별 피해경험수가 5건 이상인 경우 동일수법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확인합니다.
- ② 동일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각 사건을 각각 구별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③ 각 사건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상습피해로 보며, 그 상습 피해경험 수를 상습피해 수에 기입합니다.

[3단계] (최종 작성해야 할) 사건조사표 수의 결정방법

- ① 두 개 이상의 문항에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동일한 경험이 중복되었는지 재확인하고,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 수에 부수를 기입합니다.
- ② 문항별로 피해 경험수가 5회 이상이고 각 경험이 구별 가능하지 않은 경우로 상습피해이면 사건조사표는 1부, 피해경험 수가 5회 이상이지만 각 경험이 구별 가능한 개별 사건이면 사건조사표는 각각 모두 기입합니다.
- ③ 문항별 사건조사표 부수를 합산하여 총 사건 조사표수에 기입합니다.
- ④ 총 사건조사표 수를 응답자에게 확인하고, 그 사건 부수만큼 사건 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만일 23번~30번 문항의 내용 중 피해경험이 없을 경우 나머지 조사원 기입사항과 응답자 연락처를 기재하여 해당 조사표를 완성한다.
- 이어서 기초조사표의 첫 부분의 가구구성원 중 만14세 이상 대상자의 다음 가구원으로 이동하여 조사를 진행하며, 대상자가 모두 종료되면 완료 조사표를 정리한다.
- ✓ 확인사항에서 단 한번이라도 피해경험이 있다면 그 수만큼 적고 「사건조사표」를 바로 진행한다.
- ✓ 특정 범죄피해를 경험했을 경우「사건조사표」에서 특정 범죄피해 관련 설문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사건 조사표」에서 모든 설문 내용에 응답하도록 한다. 가령, 절도관련 범죄피해라고 하더라도「사건조사표」에서 재산피해 관련 설문문항만을 선별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설문문항의 지시문에 따라 모든 「사건조사표」문항에 응답자가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 ☞ 주요 질의 내용에서 '상습 범죄피해' 해당 내용 검토



2. 조사 대상 가구와 주변의 방법 수준

항목	예	아니요	잘 모르겠음
1) 현관이나 창문에 이중자물쇠 등 특수 잠금장치가 있다	①	②	③
2) 창문이나 비상구 등에 방범창(식상살)이 있다	①	②	③
3) 비디오폰이나 현관문에 들여다보는 구멍이 있다	①	②	③
4) 출입카드를 사용한다	①	②	③
5) 도난 경보시스템이 있다	①	②	③
6) 경비원이 있다	①	②	③
7) 집 주위 반경 20m 안에 CCTV 등 감시카메라가 있다	①	②	③
8) 집 주위 반경 20m 안에 외부 조명이 있다	①	②	③
9)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유흥업소 밀집 지역이 있다	①	②	③
10)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 공사가 있다	①	②	③
11)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공단지역(공장 밀집 지역)이 있다	①	②	③
12) 집 주위 반경 100m 안에 대규모 재래시장이 있다	①	②	③

◆ 가구 및 주변의 방법수준 | • 주변의 방법수준을 파악하여 체크한다. 잘 알지 못할 경우 응답자에게 문의하여 완성한다.

3. 주택의 유형

- ① 단독주택
- ② 아파트
- ③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④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 내 주택
- ⑤ 기타(오피스텔 등) ()

<아파트/오피스텔인 경우>

- 1) 단지 규모: 총 _____동
- 2) 층수: _____층 중 _____층
- 3) 형태: ① 계단식 ② 복도식

<p>◆주택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첫째,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 둘째,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음. • 셋째,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춘 • 넷째,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어야 함 • 이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거주용 건물, 또는 기타로 분류한다.
<p>① 단독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 한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 종류는 일반 단독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p>② 아파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의 공동주택
<p>③ 연립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p>④ 다세대 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다세대 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
<p>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거주용 건물 내에 사람이 살되, 그 주거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주택 - 영업 겸용 건물의 경우 주거면적이 영업용 면적보다 작으면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임
<p>⑥ 오피스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실과 주거를 겸한 복합주택
<p>▣ 아파트/오피스텔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규모는 총 몇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입함. • 응답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체 층수와 살고 있는 해당 층수를 기입 (라인별로 층수가 다를 경우 가장 높은 층수를 기재) - (예시) 아파트 1개 동에 13층, 15층이 있는 아파트의 3층에 살고 있는 경우 : (전체 15층 중 3층) • 복도식인지 계단식인지 선택하여 기입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p>※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p> <p>본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당사자가 동의한 개인정보는 조사 목적(조사 검증)으로만 수집 및 이용되며 외부에 어떠한 형태로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확인 서명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조사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칸타퍼블릭에 있습니다. 본 조사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주체는 칸타퍼블릭이며, 수집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로 수집된 문서는 칸타퍼블릭의 폐기 위탁업무 담당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수집 항목	수집 목적	폐기 기간	확인 서명
성명, 주소, 연락처	본인 확인 및 조사 검증	조사완료 후 1년	

응답자(가구 대표)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검증
	집전화 ()	-	
	휴대전화 ()	-	

- ◆ 정보 수집/이용 동의
 - 설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완료되어야 최종 완료
 - 통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령에 의해 정보가 보호되고, 조사 완료 후 폐기된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 ◆ 응답자 연락처
 - 수집한 연락처는 조사응답자가 응답한 내용 중 질문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반드시 고지한다.

3 사건조사표

가. 사건조사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1) '사건조사표'는 '기초조사표'에서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범죄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경험한 각 범죄피해사건에 관련된 정보를 상세하게 수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원이 면접하여 조사한다. 단, 가구원 중 밤늦게 귀가, 출장 등으로 방문시 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자기기입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가 있는 장애인이나, 고령으로 응답이 곤란한 경우 가구대표 응답자의 대리 응답을 허용할 수 있다.

- '기초조사표'에서 회상 질문을 통해 응답자가 응답한 범죄피해경험의 총 횟수에 따라 「사건조사표」의 개수가 달라진다. 가령, 작년(2016년) 한 해 동안 3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응답자가 있다면 각 사건에 대해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총 3개의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한다. 단, 각 사건의 경험은 사건 발생시간과 장소, 가해자유형, 범행수법이 상이하여 「사건조사표」를 작성할 때 응답자가 사건을 하나하나씩 구분해서 응답이 가능해야 한다.
 - 「사건조사표」는 사건과정 중에 일어난 일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각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완벽한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사건조사표」는 크게 9가지의 주요 설문내용으로 구분된다. 점검항목/사건발생 일시와 장소/범행수법/신체 피해/피해자의 대응/재산 피해/정신적 피해/가해자의 특성/경찰 신고와 처리 현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사건조사표 질문 문항은 별도의 지시문이 없다면 순차적으로 하나씩 차례대로 작성하도록 한다. 단, 지시문이 있을 경우 반드시 지시문에 따라 질문 번호로 이동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1건의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죄피해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 「사건조사표」의 응답 문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시문을 따른다.
 - 응답자가 경험한 특정 범죄피해 관련 문항에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조사표」의 모든 질문 문항에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 절도관련 범죄피해일 경우 재산피해 관련 질문 문항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문 문항의 지시문에 따라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
- 3) 「사건조사표」를 작성한 후에는 타 가구원의 「기초조사표」 작성을 진행한다.



나. 사건조사표 표지 작성 요령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 번호	사건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매 중 <input type="text"/> 번

III 조사표 작성 요령

◆ 조사표 표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는 해당 가구명부와 동일하게 기입한다.
- 가구원번호는 기초조사표의 H 가구 구성의 응답자 가구원 번호를 기입한다.
- 사건번호는 기초조사표의 '조사원 체크 사항'에 작성한 총 사건조사표 수 중 몇 번째 사건을 작성하는지 작성한다.

<유의사항>

- 이 자료는 조사 내용 검토 및 결과 집계 시 가구를 판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잘못 기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실사 사무소	조사원 성명	조사원 전화번호	조사방법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 조사원
관련사항

- 조사표를 가구에 배부하기 전, 조사원이 실사 사무소명, 조사원 성명, 조사원의 전화번호를 미리 기입하여 둔다.

◆ 조사방법

- 조사원이 해당 조사표 작성 시 주로 사용한 조사 방법에 표기하도록 한다.



다. 사건조사표 문항별 작성 요령

※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 15쪽, 가구원 13쪽) 점검 항목의 관련 문항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기초조사표
점검 항목

- 1) 관련 문항 ()번의 사건조사표 ()건 중 ()번째 사건
 - 2) 상습피해인 경우 피해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회
- ※ 관련 문항 23번 속임 피해인 경우는 18번부터 작성 하십시오.

◆ 점검 항목

- 기초조사표 조사원 체크사항의 '1. 점검항목'에 작성한 범죄피해경험의 관련문항 번호와 작성할 총 사건조사표 수, 그 중 몇 번째 사건인지를 작성한다.
- 만일 관련 사건피해가 2회 이상일 경우, 해당 사건의 순서를 정해야 한다. 사건 순서는 발생시간 순서가 될 수도 있고 심각한 정도의 순서일 수도 있다. 응답자의 기준에 따라 범죄피해사건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 각 사건을 별도의 「사건조사표」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 만일, 조사원 점검항목에서 속임 관련 피해가 3회 있었고 각기 구분할 수 있는 사건들일 경우, 작성해야 할 사건조사표 총 수는 3개이고, 본 피해사건이 총 3개 가운데 몇 번째인지 기입하면 된다.
- 만일 관련문항의 피해사건이 상습피해(가령, 학교폭력,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에 해당될 경우, 기초조사표 체크사항의 '1. 점검항목'을 보고 그 총 피해횟수를 기록한다.
- ※ 상습피해란 비슷한 수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으로 피해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피해를 말한다.
- 상습 피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가 가장 심한 사건을 기준으로 1건만 작성한다.

<유의사항>

- 점검항목은 기초조사표의 V. 조사원 체크 사항의 1. 점검항목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만일, 응답자가 사건조사표의 응답을 자기기입식으로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해당 항목은 조사원이 응답자에게 문항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미리 기입해 주도록 한다.
- 만일, 관련 문항이 23번 문항일 경우, 사건조사표 작성은 18번 문항(재산피해)부터 작성하도록 지도한다.



I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1 이 사건은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에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사 오기 이전에 발생한 것입니까?

① 현재 집에서 사는 동안 ② 예전 집에서 사는 동안

◆ 동일 주소지 여부

- 본 사건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예전 집(이사 오기 전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동안 발생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유의사항>

- 현재는 조사기준일(2017. 5. 1.) 시점으로 응답하게 한다.

2 그 사건은 언제쯤 발생했습니까?

2016년 ____월

◆ 사건 발생 시기

- 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정확한 월을 적고 필요하다면 달력을 보여주거나 당시의 큰 사건을 부각시키면서 응답자에게 응답을 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 응답자가 정확한 월을 기억할 수 없다고 한다면 휴일이나 다른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때를 얘기하면서 응답자로 하여금 사건을 경험한 월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
- ☞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스토킹, 성적 괴롭힘과 같이 사건 발생장소는 다르다 하더라도, 범죄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한 상습피해인 경우, 가장 심한 피해발생 시점을 기록하도록 한다.

3 그 사건은 대략 몇 시경에 발생했습니까?

① 새벽(03 ~ 06시) ② 아침(06 ~ 09시) ③ 오전(09 ~ 12시)
 ④ 한낮(12 ~ 15시) ⑤ 오후(15 ~ 18시) ⑥ 저녁(18 ~ 21시)
 ⑦ 밤(21 ~ 00시) ⑧ 심야(00 ~ 03시) ⑨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⑩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 ⑪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



<p>◆ 사건 발생 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이 일어난 구체적인 시간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특정 시간부터 시간 전까지임. 가령, 새벽은 03시부터 06시 전까지이며 아침은 06시부터 09시 전까지를 의미한다. • 낮인지 밤인지는 확실히 기억은 나지만 그 정확한 시간을 기억해 내는 것이 어려울 경우 '㉓ 낮에 발생했지만 시간은 모르겠음'이나 '㉔ 밤에 발생했지만 시간을 모르겠음'을 선택하도록 한다. 가령, 응답자가 낮인지 밤이지도 모르겠다고 할 경우 '㉔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음'을 선택하도록 한다.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일,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소비자 사기인 경우 범죄피해 시간을 물품 금액을 결제한 시간, 즉 피해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4 피해를 당한 지역은 어디였습니까?

① 현재 사는 시군구

② 다른 시군구 ⇒ _____ 시도 _____ 시군구

조사원 기입용 코드

③ 모르겠다 → 응답 후 **8** 번으로

<p>◆ 사건 발생 지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지역(시군구 단위)인지, 다른 지역(시군구 단위)인지 물어보고 조사한다. • 만일, 사건발생지역이 다른 시군구인데, 시군구는 모르고 읍면동만 알고 있을 경우 빈 여백에 읍면동을 기재한다. • 만일, 피해지역을 잘 모를 경우, '③ 모르겠음'을 선택하고 8 번 문항으로 바로 넘어가서 응답하도록 한다. • 조사원 기입용 코드는 조사표 회수 후, 응답자가 기입한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분류코드를 찾아 아래 칸에 기입하도록 한다. * 행정구역분류코드 기입 시 부록에 수록된 행정구역코드를 참고한다(p.128)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일, 사건이 시작된 곳과 실제 피해가 발생한 곳이 다르다면 피해를 당한 지역을 중심으로 응답하도록 한다. • 만일, 인터넷을 통한 범죄피해의 경우, 인터넷을 접속/사용한 지역으로 기록한다.



5 그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5-1 발생 장소	5-2 그곳은 구체적으로 어디였습니까?
① 집	① 우리 집 ② 기해자의 집 ③ 다른 사람의 집
② 주택이나 그 인접한 도로(거주자 우선 주차도로 포함)	① 아파트 단지 주변 ② 다세대·연립주택가 주변 ③ 단독주택 마을 주변
③ 학교	① 교실 ② 복도·계단·옥상 ③ 화장실·라커룸 ④ 도서관, 체육관, 강당, 매점 등 학교 내부시설 ⑤ 운동장 ⑥ 학교 뒷산, 학교 담장 주변 ⑦ 기타(구체적으로:)
④ 주차장	① 상업시설(백화점, 쇼핑센터 등) 주차장 ② 공공기관(관공서, 은행 등) 주차장 ③ 아파트·연립주택 단지 주차장 ④ 도로변 유료주차장이나 주차 전용 건물 ⑤ 기타(구체적으로:)
⑤ 인구 밀집 상업지	① 백화점, 시장, 가게(상점) 등 상업건물 ② 식당, 술집,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③ 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 목욕탕 ④ 극장, 공연장 ⑤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또는 현금자동지급기) ⑥ 의료기관 ⑦ 기타(구체적으로:)
⑥ 공공기관, 사무실, 공장	① 동사무소, 세무서 등 관공서 ② 기업, 회사 사무실 ③ 종교기관 ④ 공장이나 창고, 공사장 ⑤ 기타(구체적으로:)
⑦ 야외, 거리, 등산로, 산책로, 대중교통 시설 등	① 유원지, 공원, 등산로, 산책로, 공터, 체육시설 운동장(학교 운동장 제외) ② 도로 상에서(주택과 인접한 도로 제외) ③ 버스, 기차, 지하철, 택시, 항공기, 선박 등 교통시설 내부 ④ 대중교통 정거장, 역 또는 대합실
⑧ 그 외의 장소	① 그 외의 장소 (구체적으로:)

5-3 그 곳은 귀하의 직장(또는 영업장소)였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 사건 발생 장소
- 사건이 발생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다.
 - 7개 대분류 장소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난 후 구체적 장소를 체크한다.
 - 만일 제시된 7개 장소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사건이 일어났다면 '⑧ 그 외의 장소'를 선택하고 구체적인 장소를 기입하도록 한다.
 - **5-3** 번 문항에서 본 사건발생장소가 응답자의 직장이나 영업장소인지를 확인한다.
- <유의사항>
- 7개 대분류 장소를 응답자에게 알려줄 때 '거주자우선주차도로'의 경우에는 '② 도로 상에서(주택과 인접한 도로 제외)'에 포함됨을 알려준다.
 - 그 외의 장소로 기입하였으나 7개 대분류 장소에 포함될 경우 기타를 삭제하고 각 해당내용으로 체크한다.

II 범행수법

6 그 사건은 귀하의 집에서 일어났습니까? (※ 집에 들어 올 뻔한 것도 포함)

- ① 예 → 응답 후 **6-1** 번으로
- ② 아니요 → 응답 후 **8** 번으로

6-1 가해자는 귀하의 집에 살았거나 귀하의 허락으로 집에 들어왔습니까?

- ① 예 → 응답 후 **8** 번으로
- ② 아니요 → 응답 후 **7** 번으로

7 그 사건에서 가해자가 실제로 귀하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습니까?

- ① 들어왔다 → 응답 후 **7-1** 번으로
- ② 시도했으나 들어오지는 못했다 → 응답 후 **7-2** 번으로

7-1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 ① 안으로 들어오도록 직접 열어줘서
- ② 열린 문이나 창문으로(문단속을 하지 않아서)
- ③ 잠긴 문을 열쇠로 열고
- ④ 문이나 문에 달린 자물쇠를 부수고
- ⑤ 유리창을 깨거나 방범창을 부수고
- ⑥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음
- ⑦ 그 외의 경우 (구체적으로: _____)

7-2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집에 귀하나 가구원이 있었습니까?

- ① 있었다 → 응답 후 **7-3** 번으로
- ② 없었다 → 응답 후 **10** 번으로

7-3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 ① 나 → 응답 후 **8** 번으로
- ② 나와 가구원들
- ③ 나 이외의 가구원들 → 응답 후 **10** 번으로



◆ 주거침입
여부

- 6번과 7번 문항은 모두 본 사건이 주거침입과 연관된 것인지를 묻는 문항이다.
- 먼저 본 사건이 응답자 집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묻는다. 집에 들어오려고 시도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만일, 집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닐 경우, 8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만일 집에서 발생한 사건일 경우, 뒤이어 6-1번 문항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집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여부를 묻는다. 만일 동의하에 들어온 경우라면, 8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만일 응답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실제로 가해자가 응답자의 집(현관, 마당 등 포함)에 들어왔는지를 묻는다. 만일 가해자가 실제로 들어왔다고 응답했다면, 7-1번 문항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가해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기 항목에서 선택한다. 보기에 해당하는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⑦ 그 외의 경우'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기록한다.
- 만일 시도했으나 들어오지는 못했을 경우엔 7-2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7-2번 문항은 가해자가 사건 당시 응답자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다고 응답한 경우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사건 발생 당시 응답자나 응답자의 가구원이 그 장소에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 가해자가 응답자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을 당시 응답자나 가구원이 그 장소에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있었는지 7-3번 문항에서 선택한다.
- 가해자가 응답자의 집(현관, 마당 등)으로 들어왔을 당시 아무도 없었다면, 10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8 그 사건의 가해자는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었거나 사용했었습니까?

- ① 그렇다 → 응답 후 **8-1** 번으로
- ② 아니다] → 응답 후 **9** 번으로
- ③ 모르겠다]

8-1 가해자가 들었거나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총(가스총, 모의 총기 포함) ② 칼, 가위, 송곳, 도끼, 낫 등
- ③ 유리병, 돌, 몽둥이 등 ④ 펀치, 드라이버, 줄(밧줄) 등
- ⑤ 마취제, 독극물 ⑥ 전기충격기
- ⑦ 스프레이 ⑧ 그 외의 물건으로(구체적으로:)

8-2 가해자가 사용했던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미리 준비한 것입니까?

- ① 사전에 준비하여 들고 왔었다
- ② 현장의 것을 사용했었다
- ③ 모르겠다

◆ 흉기 사용 여부

- 본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거나 사용했는지 알아 보려는 것이다.
- 만일, 가해자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잘 모를 경우, **9**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만일, 본 사건에서 무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8-1**번 문항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하고, **8-2**번 문항에서 그 무기나 위험한 물건이 미리 준비된 것인지 체크한다.

<유의사항>

- 무기나 위험한 물건은 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할 수 있다.
- 본 사건 당시 가해자가 무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들고만 있었다라도 '① 그렇다'로 응답한다.
- 가해자가 들고 있었거나 사용한 무기의 유형은 모두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 만일, 가해자가 사전에 준비하여 들고 온 무기와 현장의 것을 모두 사용했을 경우 사전에 '① 사전에 준비하여 들고 왔었다'를 선택하도록 한다.





9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떤 방식으로든(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실제로 신체적인 공격(성폭력 포함)을 가했습니까?

- ① 신체 공격을 했다 → 응답 후 **12** 번으로
- ② 실제로 공격은 안했지만, 폭행하겠다고 위협(협박)했다 → 응답 후 **11** 번으로
- ③ 신체 공격이나 위협(협박)은 없었다 → 응답 후 **10** 번으로

◆ 위협, 폭행이나 성폭력 여부

- 본 사건에서 가해자가 응답자에게 신체적인 공격(성폭력 포함)이나 위협을 가하였는지 물어보는 것이다.
- 본 사건에서 가해자로부터 실제 어떠한 신체적인 공격(성폭력 포함)을 경험하였다면, **12** 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응답하도록 한다. 만일 실제 신체적인 공격은 안했지만, 말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했다면 **11** 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진행한다. 본 사건에서 아무런 신체적 공격(성폭력 포함)이나 위협이 없었던 경우라면, 뒤이어 **10** 번 문항으로 진행한다.

<유의사항>

- 보기 항목 ②번의 경우는 신체 공격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이 있는 경우이다.

10 그 사건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무언가를 몰래 또는 허락 없이 가져갔음
- ② 무언가를 훔치려 했거나 훔치겠다고 위협함
- ③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말로 괴롭힘
- ④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하려 했음
- ⑤ 집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 ⑥ 자동차에 허락 없이 침입했거나 침입하려 했음
- ⑦ 재물을 파괴했거나 손상을 입혔음
- ⑧ 재물을 파괴, 손상하겠다고 위협했음
- ⑨ 음란하거나 혐오스러운 문자, 영상, 이메일 등을 지속적으로 보냈음
- ⑩ 집요하게 뒤따라 다니며 몰래 엿담, 감시, 스토킹을 했음
- ⑪ 내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했거나, 비방이나 헛소문을 퍼뜨려 괴롭혔음
- ⑫ 그 외의 일 (구체적으로 : _____)

▶▶ 응답 후 **19** 번으로



<p>◆ 신체공격이나 위협이 전혀 없는 사건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무런 신체적 공격이나 위협이 없는 사건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 사건의 구체적인 가해자 행위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 여기에서는 신체적 피해가 없는 사건유형들로서 (1) 피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령, 절도, 강도, 기물파손 등), (2) 피해자의 사생활 등을 침해하는 범죄(가령, 주거침입, 모욕, 협박(위협), 지속적 괴롭힘 또는 스토킹) 및 (3) 원치않는 성접촉(성추행이나 성폭력) 등과 같은 유형이 주로 해당된다. • 보기에 해당하는 사건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㉔ 그 외의 일'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기록한다. • 응답 후에는 19번 문항으로 이동한다.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건에서 응답자가 경험한 피해내용 모두를 표시하도록 한다. •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폭행 이외에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적인 성적인 접촉과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은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 때로는 물리적 폭행이나 강한 협박이 없이도 원치 않는 성접촉(성추행이나 강간 이외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 보기항목 ㉓번의 경우에는 대면상황에서의 말 뿐 아니라 전화를 통한 괴롭힘도 포함되며 성적 농담도 포함될 수 있다.

11 그 사건의 가해자는 귀하에게 어떻게 위협(협박)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강간하겠다고 말로써 위협
- ② 죽이겠다고 말로써 위협
- ③ 살해나 강간은 아니지만 폭행을 하겠다고 말로써 위협
- ④ 강간은 아니지만 다른 성폭력을 하려고 말로써 위협
- ⑤ 무력으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함
- ⑥ 무력은 아니지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당함
- ⑦ 칼 등의 흉기를 보여줌으로써 위협
- ⑧ 총을 발사했으나 빗나감
- ⑨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신체 공격을 시도함
- ⑩ 흉기 이외의 물건으로 신체 공격을 시도함
- ⑪ 나에게 물건을 던졌으나 빗나감
- ⑫ 뒤쫓아 오거나 주위를 에워쌌
- ⑬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기, 핏줄기, 발로 차기, 목 조르기, 밀치기, 붙잡기 등을 시도함
- ⑭ 그 외의 위협(협박)(구체적으로: _____)

▶▶ 응답 후 13번으로



<p>◆ 신체공격 시도 및 위협 있는 사건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신체적 공격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공격을 당할 뻔하거나 위협을 경험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 사건의 구체적인 가해자 행위(말 포함)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 여기에서는 피해자에게 신체피해를 주겠다는 위협(협박)이나 공격시도행위, 원치 않는 성접촉(성추행이나 강간이외 성폭력) 등이 주로 해당된다. 하지만 강간이나 강간미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해자의 신체공격을 시도하려 할 때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기 항목에서 모두 선택한다. • 보기에 해당하는 사건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⑭ 그 외의 위협'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기록한다. • 응답 후에는 13번 문항으로 이동한다.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건에서 경험한 피해내용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 강간이나 강간미수 사건의 경우엔 12번 문항에서 응답하도록 한다. •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폭행 이외에 물리력을 동반한 강제적인 성적인 접촉과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은 성적인 접촉을 당했거나 당할 뻔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한다. ☞ 때로는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이도 원치 않는 성접촉(성추행이나 강간 이외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12 신체공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강간을 했다
- ② 강간하려 했다
- ③ 강간(미수) 이외의 성폭력을 했다
- ④ 총을 발사했다
- ⑤ 칼 등의 흉기로 찔렀다
- ⑥ 칼 등의 흉기로 신체를 공격하려 했다
- ⑦ 흉기 이외의 물건을 사용하여 신체를 공격했다
- ⑧ 흉기 이외의 물건을 사용하여 신체를 공격하려 했다
- ⑨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기, 할퀴기, 발로 차기, 목 조르기, 밀치기, 붙잡기 등
- ⑩ 그 외의 행동(구체적으로 :)

12-1 폭행이나 성폭력을 하기 전에 가해자가 귀하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위협을 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 신체공격 있는 사건내용

- 실제로 신체적 공격을 당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본 사건의 구체적인 가해자 행위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 여기에서는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신체적 피해를 주었거나 주려고 시도한 행위가 해당된다. 강간미수의 경우에도 강간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나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다. 가해자가 신체적 공격을 할 때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기 항목에서 모두 선택한다.
- 보기에 해당하는 사건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㉑ 그 외의 행동’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기록한다.
-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항목에서 선택 후, 12-1 번 문항에서 신체공격을 가하기 전에 가해자가 신체위협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응답받는다.
- 응답 후에는 13 번 문항으로 이동한다.

III 신체 피해

13 그 사건으로 인해 귀하는 어떠한 신체적 피해를 당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신체 피해는 없었음 → 응답 후 15 번으로
- ② 강간
- ③ 강간미수
- ④ 강간(미수) 이외의 다른 성추행
- ⑤ 칼(가위, 송곳 등 날카로운 물건)에 의한 부상
- ⑥ 총기(모의 총기 포함)에 의한 부상
- ⑦ 뼈나 이에 금이 가거나 부러짐(신체 골절)
- ⑧ 장기 손상
- ⑨ 기절함(의식 불명)
- ⑩ 몸이나 눈에 멍이 드는 등 타박상, 핏자국이나 긁힘
- ⑪ 그 외의 피해(구체적으로 :)

◆ 신체피해내용

- 본 사건으로 인하여 응답자가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는지, 경험하였다면 어떤 유형의 피해를 당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본 사건 발생 당시 응답자가 경험한 신체적 피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다.
- ‘① 신체 피해는 없었음’에 응답하면 ②-⑩은 응답하지 않고 15 번 문항으로 이동한다.

<유의사항>

- 만일, 보기에 제시한 피해내용 이외에 다른 피해가 있을 경우 ‘㉑ 그 외의 피해’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14 그 사건으로 입은 상처를 어디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개인병원이나 한의원, 보건소
- ② 종합병원 병원 응급센터
- ③ 의료적 처치를 받은 적 없음
- ④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 ⑤ 집에서
- ⑥ 학교·직장 등의 의무실 등
- ⑦ 그 외의 곳(구체적으로 :)

◆ 신체피해의 치료 여부

- **13** 번 문항에서 응답자가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하였다면, 그 당시 입은 신체적 피해를 어디에서 검사 또는 치료를 하였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만일, 보기에 해당하는 곳이 없을 경우에는 ' ⑦ 그 외의 곳'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14-1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 ① 예 → 응답 후 **14-2** 번으로
- ② 아니요 → 응답 후 **14-3** 번으로

14-2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입원을 했습니까?

- ① 예 → _____ 일
- ② 아니요

◆ 입원 및 치료여부

- **14-1** 번 문항에서는 본 사건으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지, 치료를 받지 않았는지를 질문하여 기입한다. 치료를 받았다면 **14-2** 번 문항에서 입원여부를 별도로 질문하고,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14-3** 번 문항으로 이동하여 조사한다.
- **14-2** 번 문항에서는 병원치료를 위해 입원 여부를 묻고, 입원을 했다면 며칠 했는지 질문하여 기입한다.
- 100일 이상이면 다시 한 번 확인한다.



14-3 그 사건으로 지불한 의료비는 총 얼마였습니까? (* 약 구입, 물리치료 등 포함)
 _____ 만 원 (* 예: 3천원이면 0.3만원)

◆ 의료비 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3 번 문항은 본 사건으로 인한 신체피해 치료를 위해 지불한 의료비는 총 얼마나 들었는지 물어보고 기입한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사건으로 인하여 지불한 의료비의 총 금액은 병원치료비 외에도 진단서 비용, 물리치료비 등의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 피해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이며 1만원 미만은 소숫점을 사용하여 조사한다.(3천원인 경우 '0.3'으로 작성한다)

14-4 그 사건으로 입은 신체 피해(상해)로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나 휴가를 내거나, 영업 활동이나 가사를 하지 못하는 등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_____ 일 ② 없었다
 (* 단, 24시간 미만이면 1일)

◆ 신체피해로 인한 일상활동 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4 번은 그 사건으로 인한 신체피해로 인하여 응답자의 일상 활동이 중단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간 손실이 대략 며칠이나 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건으로 인한 신체피해로 학교나 학원(혹은 직장)을 못 간다거나 평상시 할 수 있었던 가사 일을 못한다거나 등의 일상 적인 활동이 중단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 24시간 미만은 1일로 계산하며, 100일 이상이면 다시 한 번 확인한다.

14-5 그 사건의 가해자로부터 신체 피해(상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았습니까?
 ① 전부 받았다 ② 일부 받았다 (전체의 _____%)
 ③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④ 요구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⑤ 요구하지 않았다

◆ 신체피해에 대한 배상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5 번은 응답자가 가해자로부터 상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만일, '② 일부 받았다'에 응답하면 전체의 몇% 정도를 받았는지 내용을 기록한다.
-----------------	---



IV 피해자의 대응

15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귀하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모르겠다

- ◆ 음주 여부
 - 본 사건 발생 당시 응답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만약 가볍게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음주를 하였다고 표시한다.

- <유의사항>
 - 사건 발생 당시 응답자의 음주상태 판단기준 역시 응답자 본인의 판단에만 의존해야 하는 것으로 가급적 최대한 그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떠올리도록 해야 한다.

16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귀하와 가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만 14세 미만 아동은 제외)이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응답 후 16-1 번으로
 ② 없었다 → 응답 후 17 번으로
 ③ 모르겠다 → 응답 후 17 번으로

16-1 그 사건이 발생할 때, 귀하와 같이 있던 사람 중 상해를 입거나, 상해 위협을 받거나, 강도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_____ 명 ② 없었다

- ◆ 동반피해 여부
 - 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응답자와 범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현장에 있었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만일, 사건 당시 응답자와 범인 이외에 14세 미만의 아동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이 사건 발생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16-1 번 문항을 조사하고, 사건 당시 응답자와 범인 이외에 14세 미만의 아동을 제외하고 아무도 없었거나 모르겠으면, 17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16-1 번 문항은 사건이 발생당시 범인 이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현장에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본 사건에서 응답자와 더불어 다 치거나 위협을 받았거나 강도를 당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만일, 있다면 '① 있었다'를 선택하고, 몇 명인지 대략의 숫자를 적는다.



17 그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까?

- ① 예 → 응답 후 **17-1** 번으로
- ② 아니요 → 응답 후 **19** 번으로

17-1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무기 등물건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대항
 - ②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대항
 - ③ 소리 지르기,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의 위협이나 경고
 - ④ 협상, 애원, 설득 등 가해자에게 사정
 - ⑤ 탈출이나 도망을 하거나 시도함
 - ⑥ 경찰, 경비원에게 도움을 요청
 - ⑦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
 - ⑧ 숨거나(숨기거나) 회피
 - ⑨ 그 외의 행동(구체적으로 :)
- 응답 후 **17-2** 번으로
- 응답 후 **17-3** 번으로

17-2 무기 사용이나 신체 공격을 먼저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 ① 나
- ② 가해자
- ③ 함께 있던 다른 사람
- ④ 모르겠음

17-3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은 그 사건에서 신체 피해(상해)를 입었습니까?

- ① 예 → 응답 후 **17-4** 번으로
- ② 아니요 → 응답 후 **17-5** 번으로

17-4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은 신체 피해(상해)를 입기 전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 후에 한 것입니까?

- ① 신체 피해(상해) 입기 전
- ② 신체 피해(상해) 입은 후
- ③ 신체 피해(상해) 발생과 동시에
- ④ 신체 피해(상해) 없음
- ⑤ 모르겠음

17-5 귀하 또는 함께 있던 사람의 대응 행동이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더 큰 상처나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되었음
- ② 가해자를 붙잡는 데 도움이 되었음
- ③ 탈출하거나 도피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
- ④ 상황을 악화시켜, 실제 상해나 재산 피해가 더 컸음
- ⑤ 상황을 악화시켜,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받았음
- ⑥ 가해자가 더 공격적, 폭력적이 되었음
- ⑦ 모르겠음
- ⑧ 그 외의 영향 (구체적으로:)

▶▶ 응답 후 **19** 번으로



<p>◆ 피해자 방어행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자신(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어행동이나 대응을 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만일,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방어나 대응을 하였다고 응답했다면, 17-1번 문항으로 진행하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인 19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p>◆ 피해자의 구체적 대응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 문항은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자신(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방어나 대응을 하였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본 사건 당시 응답자 및 함께 있던 사람이 했던 방어행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다. • 만일, 보기에 제시한 피해내용이외에 다른 피해가 있을 경우 '㉠ 그 외의 행동'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 만일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의 대응행동 가운데 '㉠ 무기나 물건을 가지고 가해자에게 대항'하거나, '㉡ 주먹이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가해자에게 대항'하였다면, 17-2번 문항으로 진행하여 조사한다. 그 외의 대응행동(㉢~㉣)이 있었던 경우는 17-3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진행한다. • ㉠ 또는 ㉡번에 응답하고, ㉢~㉣번에도 응답할 경우 17-2번 문항부터 조사한다.
<p>◆ 선제공격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2번 문항은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자신(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무기를 사용하거나 신체적 공격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p>◆ 신체피해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3번 문항은 실제로 대응과정에서 응답자 혹은 함께 있던 사람이 신체피해(상해)를 당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 본 사건에서 신체피해(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7-4번 문항으로 진행하고, 만일 피해(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7-5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p>◆ 방어행동과 신체피해와의 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4번 문항은 사건이 진행될 당시, 자신 또는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대응행동을 했다고 응답한 경우, 그것이 상해피해를 입기 전에 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p>◆ 방어행동의 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5번 문항은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 응답자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자신(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한 대응행동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이 진행될 당시 방어행동나 대응행동에는 가령, 크게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해자와의 협상을 시도했거나 가해자와 신체적으로 격투를 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된다. 보다 구체적인 행동의 예는 17-1번 문항을 참고하도록 한다.



V 재산 피해

18 귀하가 속임(사기)을 당해 재산 피해를 입은 사건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18-1 그 사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한 사건에서 겪은 내용들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우체국, 전화국, 은행, 신용카드회사, 국세청, 수사기관, 가족 등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여 보냄
 - ② 가짜 은행 홈페이지에서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정보를 보냄
 - ③ 누군가 돈을 값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값겠다고 속여 돈을 빌려 감
 - ④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
 - ⑤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가짜 상품을 진품이라고 속여 판매함
 - ⑥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공짜, 할인, 경품 당첨 등을 미끼로 상품을 구매하게 함
 - ⑦ 상점(인터넷쇼핑몰 포함)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양을 심하게 속여 판매함
 - ⑧ 그 외의 사기(속임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구체적으로:)

- 18-2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용한 사기 수법이나 수단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방송·신문을 통한 (허위)광고
 - ② 전단지나 거리에서의 (허위)광고
 - ③ 전화(허위)광고
 - ④ 보이스 피싱
 - ⑤ 사기 인터넷 사이트의 개설
 - ⑥ 인터넷 쇼핑사이트
 - ⑦ 공문서나 사문서의 위조
 - ⑧ 그럴듯한 말씀씨
 - ⑨ 제3자나 전문가 등의 보증
 - ⑩ 범인과 공모한 가짜 고객들을 동원함
 - ⑪ 그 외의 수단(구체적으로:)

▶▶ 응답 후 19-6 번으로



- ◆ 사기피해 경험
- 18번 문항은 응답자가 누군가에게 속아 금전적인 손해(사기피해)를 겪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① 있었다'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당할 뻔한 적(미수)은 해당되지 않는다.
 - 만일, 본 사건이 사기피해에 해당된다면, 18-1번과 18-2번 문항을 계속 진행하고, 본 사건이 사기피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19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18-1번 문항은 본 사건에서 겪은 구체적인 피해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건에서 겪은 내용들만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만일, 보기에 제시한 피해내용이외에 다른 주요피해가 있을 경우 ⑧ 그 외의 피해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 18-2번 문항은 본 사건의 주요 사기수법(수단)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한 사건에서 겪은 사기수법들만 모두 표시하도록 한다. 만일, 보기에 제시한 내용이외에 다른 방법일 경우 ⑩ 그 외의 피해에 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한다. 응답 후 19-6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 <유의사항>
- 기초조사표 23번 관련 문항에 피해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본 문항부터 작성하도록 한다.
 - 사기피해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인터넷을 통한 피해도 포함된다.

19 그 사건에서 귀하 또는 가구원의 물건이나 재산을 도둑맞았거나 빼앗겼습니까?

① 예 → 응답 후 19-1번으로
 ② 피해당할 뻔했음 → 응답 후 20번으로
 ③ 아니요

19-1 귀하는 피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① 피해 발생 당시 ② 1일 이내 ③ 2 ~ 3일 이내
 ④ 1주 이내 ⑤ 2주 이내 ⑥ 3 ~ 4주 이내
 ⑦ 1개월 이후에

19-2 그 사건에서 피해를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
 ② 차량(자동차나 오토바이 등) → 응답 후 19-3번으로
 ③ 현금, 수표, 상품권 등
 ④ 신용카드, 현금지급카드, 교통카드
 ⑤ 지갑, 핸드백, 가방
 ⑥ 개인 휴대 물품(휴대전화, 노트북, MP3, 의류, 도서, 게임기 등) → 응답 후 19-4번으로
 ⑦ 자동차 부품 (내비게이션, 타이어힐 캡, 워셔라디오 등)
 ⑧ TV, DVD 플레이어, VCR, 오디오 등 가전제품
 ⑨ 귀금속, 도자기, 예술품, 가구
 ⑩ 그 외의 피해 (구체적으로:)

◆ 재산피해 인지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1 번 문항은 응답자 혹은 가구원이 가진 물품이나 재산을 도난당하거나 빼앗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피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재산피해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 번 문항은 응답자 혹은 가구원이 가진 물품이나 재산을 도난당하거나 빼앗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피해를 당한 물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어보고자 한다. • 피해물품 가운데 '① 자전거 혹은 그 부속품'이나 '② 차량(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이 있다면, 19-3 번 문항으로 진행하여 응답받는다. 만일 피해물품이 이외의 유형(③-⑩)이라면, 19-4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①, ②에 응답하고, ③-⑩에도 응답할 경우 19-3 번 문항부터 조사한다.
◆ 차량 직접인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3 번 문항은 피해물품이 자전거(부속품 포함)나 차량(오토바이 포함)인 경우에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응답자가 직접 범인에게 그 물품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건넨 것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 직접접촉에 의한 재산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 번 문항은 재산피해가 발생한 본 사건 당시에서 가해자가 응답자에게 직접적인 접촉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경우 접촉 시도했거나 미수된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 19-5 번 문항에서는 응답자가 19-4 번 문항에서 '① 그렇다'를 선택한 경우,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져갔는지 앞서 19-2 번 문항의 보기에서 골라, 해당번호를 모두 기입한다.
◆ 재산피해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 번 문항은 재산피해(사기피해 포함)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본 사건으로 인한 피해물품이나 재산의 현금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질문이다. • 현금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①번을 선택 후 구체적인 금액을 적고, 잘 모를 경우 ②번을 선택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 가치를 판단할 때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기, 도난당하거나 빼앗긴 물품의 현 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현 시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구입금액을 기입하도록 한다. - 피해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이며 1만원 미만은 소숫점을 사용하여 조사한다.(3천원인 경우 '0.3'으로 작성한다)
◆ 재산 피해물품 회수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 번 문항은 본 사건에서 재산피해(사기피해 포함)를 입었다고 응답한 경우, 피해물품이나 돈을 되찾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것은 제외하고 응답하도록 한다.
◆ 본 사건의 동반피해자 존재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 번 문항은 본 사건으로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경우(사기피해 포함), 같은 사건으로 응답자 이외에도 재산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몇 명인지 물어보는 것이다. • 만일, 본 사건에 응답자 이외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① 있었다'를 선택하고, 몇 명인지 대략의 숫자를 적는다.



20 그 사건으로 귀하 또는 가구원들이 가진 물건이 손상(파손)되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차량(및 부품) → 응답 후 **20-1** 번으로
- ② 주택의 창문, 자물쇠, 출입문
- ③ 정원(나무, 관목, 울타리)
- ④ 가구·가전 등 가정용품
- ⑤ 의류
- ⑥ 그 외의 물건(구체적으로:) → 응답 후 **20-2** 번으로
- ⑦ 없었음 → 응답 후 **21** 번으로

20-1 보험회사에 신고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요

20-2 귀하가 판단하시기에, 그 사건으로 손상(파손)된 물건의 수리비(수리 가능한 경우) 또는 재구입 가격(수리 불가능한 경우)은 얼마입니까?

- ① _____ 만 원
- ② 모르겠다

20-3 귀하는 가해자로부터 손상(파손)된 물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았습니까?

- ① 전부 받았다
- ② 일부 받았다(전체의 _____ %)
- ③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
- ④ 요구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⑤ 요구하지 않았다

20-4 손상(파손)당한 물건을 수리하거나 새로 구입했습니까?

- ① 그렇다 → 수리하거나 새로 사는 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_____ 일
- ② 아니다

◆ 파손(손괴) 피해

- **20** 번 문항은 본 사건으로 응답자나 가구원 소유의 물품에 파손(손괴)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이다.
- 만일, 본 사건으로 인해 물품파손피해가 있었다면, 보기항목에서 해당하는 물품을 모두 선택한다. 보기항목에 없을 경우에는 '⑥ 그 외의 물건'을 선택 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한다.
- 본 사건에서 아무런 물품의 파손이나 손괴가 없어 '⑦ 없었음'에 응답하면 **21**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본 사건에서 파손(손상)된 물품이 '① 차량(및 부품)'인 경우에는 **20-1** 번 문항으로 진행하여, 피해내용을 보험사에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이외 다른 항목(②-⑥)인 경우에는 **20-2** 번 문항으로 넘어가서 응답한다.
- '① 차량(및 부품)'에 응답하고, '②-⑥' 항목에도 응답할 경우 **20-1**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 파손(손상)된 물품의 현금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 번 문항은 손상된 피해물품의 현금 가치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현금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있다면 ①번을 선택하여 구체적인 액수를 적고, 잘 모를 경우 ②번을 선택한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상된 피해물품의 현금 가치를 판단할 때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손상 정도에 따라, 수리나 교체 등으로 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기입하고,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현 시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현 시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구입금액을 기입하도록 한다.
◆ 파손(손괴)에 대한 피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 번 문항은 본 사건에서 물품의 파손(손괴)이 있었을 경우, 가해자로부터 손상된 피해물품에 대한 피해배상을 받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 파손(손괴) 피해 물품의 수리나 대체여부 및 시간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 번 문항은 수리 및 대체(새로 구입)여부와 여기에 걸린 시간을 파악한다.

V 정신적 피해

21 그 사건으로 아래 항목별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으신 적이 있었는지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있었다	없었다
1) 우울함(무력감, 자신감 상실)	①	②
2) 고립감(외로움, 갇힌 느낌)	①	②
3) 두려움(공황 상태, 쇼크)	①	②
4)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	①	②
5)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유지의 어려움	①	②
6) 사람을 피해서 이사(또는 전학)	①	②
7) 자살 충동	①	②
8) 자살 시도	①	②
9) 그 외의 고통 (구체적으로: _____)	①	②

21-1 그 사건으로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때문에 학교를 결석하거나 직장에 병가나 휴가를 내거나 영업활동이나 가사를 못하는 등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① 있었다 → _____ 일 ② 없었다

21-2 그 사건으로 생긴 두려움, 불안, 정서장애 때문에 심리 상담을 받거나 신경정신과 등에서 진료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① 있었다 →

1) 상담과 진료 기간	2) 상담과 진료 비용
_____ 일	_____ 만 원

② 없었다



◆ 정신적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번 문항은 본 사건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으로 보기 문항에 응답한다. 만일 보기 문항 이외에 정신적 고통이 있었을 경우 '9) 그 외에 고통'에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다.
◆ 심리상담이나 신경정신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 번 문항은 그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등 간접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의 중지, 일상생활의 중단 등을 경험했는지 질문하고, 만일 있었다면, 그 시간순실이 대략 며칠쯤으로 추산되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 21-2 번 문항은 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심리상담 소나 신경정신과 등에 간 경험이 있는지를 묻고, 만일 있었다면, 그 상담 및 치료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와 실제 소요된 비용은 얼마정도 들었는지 기입하도록 한다. 만약, 그 사건으로 인해 현재도 상담 및 치료 중에 있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대략적 치료비까지 합하여 기입한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를 경험한 사건 이후 그 사건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소나 신경정신과에 간 경험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즉,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부터 간 경험은 응답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부터 병원을 다니고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한다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치료기간과 치료비용에 대해서만 응답하도록 한다.

22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귀하의 감정 변화와 가장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항목	매우 낮아졌다	낮아진 편이다	변화없다	높아진 편이다	매우 높아졌다
1) 누군가 나를 공격할 경우, 나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매우 가치 있고 존중받는 존재라는 느낌(자존감)	①	②	③	④	⑤
3) 사람들에게 대한 신뢰감	①	②	③	④	⑤
4)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감	①	②	③	④	⑤
5)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에 대한 존중감	①	②	③	④	⑤

◆ 사건 전후의 감정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 번 문항은 응답자가 본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 이전과 비교하여 활동, 감정 및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려는 문항으로 5가지 문항 각각에 대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표시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급적 해당 사건조사표의 내용을 중심(기준)으로, 본 피해사건을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현재 어떠한지 응답하도록 유의한다.



VI 가해자의 특성

23 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무언가를(예를 들어, 가해자 수, 남자인지 여자인지, 젊었는지 늙었는지 등) 알았습니까?

- ① 예 → 응답 후 23-1 번으로
- ② 아니요 → 응답 후 24 번으로

23-1 가해자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① 내가 직접 보거나 소리를 들어서
- ② 현장을 본 가족이 알려줘서
- ③ 가족 이외 목격자가 알려줘서
- ④ 경찰이 알려줘서
- ⑤ 그 외의 경우(구체적으로 :)

23-2 그 사건의 가해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개인(들) → 응답 후 23-3 번으로
- ② 기업이나 상점 □ → 응답 후 24 번으로
- ③ 공공기관 □

23-3 그 사건의 가해자는 모두 몇 명이었습니다?
____명

23-4 그 사건의 가해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 ② 여자
- ③ 남녀 모두
- ④ 모르겠다

23-5 그 사건의 가해자의 연령대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 여러 명일 경우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12세 미만(아동)
- ② 10대 중반
- ③ 10대 후반
- ④ 20대
- ⑤ 30대
- ⑥ 40대
- ⑦ 50대
- ⑧ 60대 이상
- ⑨ 모르겠다

23-6 그 사건 당시 가해자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까?
(*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그렇다'로 선택해 주십시오.)

- ① 그렇다
- ② 아니다
- ③ 모르겠다

23-7 그 사건의 가해자와 귀하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알면 '친인척(가족 포함)' 또는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에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23-7-1 관계	23-7-2 구체적 관계
① 친인척 (가족 포함)	① 남편·아내 ② (조)부모 ③ (손)자녀 ④ 형제·자매 ⑤ 전남편·전처 ⑥ 기타 친인척
②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	⑦ 친구 ⑧ 애인(전 애인 포함) ⑨ 학교 선후배 ⑩ 직장 동료 ⑩ 직장 상사 ⑩ 거래하던 사람 ⑬ 잘 아는 이웃 ⑭ 얼굴만 아는 사람
③ 전혀 모르는 사람	

<p>◆ 가해자 인지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번 문항은 응답자에게 본 사건의 가해자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만일 안다면, 23-1번 문항으로 이동하여 가해자 인지방법 및 특성에 대한 질문에 계속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만일 모른다면, '㉔ 아니오'를 선택하고, 다음 24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p>◆ 가해자 인지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1번 문항은 응답자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을 경우,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 인지방법을 묻는 것이다. 보기에 해당내용이 없을 경우 '㉕ 그 외의 경우'를 선택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다.
<p>◆ 가해자 유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2번 문항은 응답자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경우, 본 사건의 가해자의 유형을 물어보는 것이다. 만일, 가해자가 ① 개인(들)이라면 23-3번 문항으로 계속 진행하여 응답하고, 가해자가 ② 기업이나 상점, 혹은 ③ 공공기관'인 경우 24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나 상점 - 경영규모에 상관없이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조직단위의 기업이나 상인이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점포인 상점이 이에 해당한다. 가령, 유흥회사인 줄 모르고 사기피해를 경험한 경우에 이에 해당한다. ✓ 공공기관 - 대한민국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구청(시청, 군청, 동사무소), 보건소, 교육청, 우체국, 경찰서(파출소), 소방서, 법원, 철도청, 도서관 등이 포함된다. 가령, 우체국의 예금횡령 사건피해를 경험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p>◆ 가해자 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3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에게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모두 몇 명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 발생 당시 있었던 사람의 수를 모두 기입하도록 한다.
<p>◆ 가해자 성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4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해당하는 질문으로 가해자의 성별을 알아보는 것이다.



◆ 가해자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5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해당하는 질문으로 가해자의 연령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 응답하도록 한다.
◆ 가해자의 음주 상태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6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해당하는 질문으로 사건 당시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 당시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다고 응답했다면 가해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거나 하는 등의 상황적 요인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 가해자와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7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응답자 가운데 가해자가 개인(들)일 경우 해당하는 질문으로 그 사건 가해자와 응답자와의 관계를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먼저 23-7-1번 문항에서 관계분류를 선택하고 난 후, 23-7-2번 문항에서 구체적인 관계를 표시하도록 한다.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일, 가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한 사람이라도 알면, '친인척(가족포함)'이거나 '친인척 이외 아는 사람'에 누구인지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응답하도록 한다.

VIII 경찰 신고와 처리 현황

24 귀하는 그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 ① 신고 했다 → 응답 후 24-1 번으로
- ② 신고하지 않았다 → 응답 후 24-9 번으로

24-1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input type="checkbox"/>	2순위 <input type="checkbox"/>
------------------------------	------------------------------

- ① 가해자를 검거·처벌하기 위하여
- ② 손실(피해)을 회복하기 위하여
- ③ 앞으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④ 경찰의 순찰 활동을 개선하기 위하여
- ⑤ 범치는 당연히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 ⑥ 그 외의 이유(구체적으로: _____)

24-2 귀하가 신고한 후, 경찰은 조치를 했습니까?

- ① 예 → 응답 후 24-3 번으로
- ② 아니요 → 응답 후 24-4 번으로

24-3 귀하가 신고한 후, 경찰은 어떠한 조치를 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전화로 피해 상황을 확인했다
- ② 직접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 내용을 확인했다
- ③ 증거 채취, 주변 수색 등 적극적인 수사를 했다
- ④ 사건을 해결해 주었다

24-4 경찰은 귀하가 신고한 사건이 언제 어떻게 다루어질 것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습니까?

- ① 제공했다 → 응답 후 24-5 번으로
- ② 제공하지 않았다 → 응답 후 24-6 번으로

24-5 귀하는 경찰로부터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 ①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
- ②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다
- ③ 반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 ④ 조금밖에 이해할 수 없었다
- ⑤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p>24-6 신고 이후, 경찰의 조치에 만족했습니까? ① 매우 만족했다 ② 약간 만족했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했다 ⑤ 매우 불만족했다</p>
<p>24-7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습니까? ① 모두 검거했다 ② 일부를 검거했다 ③ 아무도 검거하지 못했다 ④ 모르겠다</p>

III 조사표 작성 요령

<p>◆ 경찰신고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 번 문항은 경찰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와 상관없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 만일, 본 사건을 신고를 한 경우에는 24-1번부터 24-8번까지 응답하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4-9 번 문항으로 넘어간다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은 지역 내 경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항경찰, 순찰 공무원 등 특정 지역에서 체포 권한이 있는 모든 공무원이 포함된다. 즉, 사설보안직원, 건물 경비원 등은 제외된다. • 응답자가 사설보안직원, 건물 경비원 등에게 신고하는 등 신고 과정이 공식적인 신고절차가 아니었다면 '㉔ 신고하지 않았다'에 표시해야 한다.
<p>◆ 경찰신고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1 번 문항은 본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것으로 5가지의 보기에서 골라, 가장 주된 이유와 차 순위의 이유를 각각 기입한다. 만일, 보기에 해당내용이 없을 경우 '㉔ 그 외의 경우'를 선택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다. • 응답자가 사건 당시 신고했던 상황을 기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필요에 따라서 그 당시 응답자의 행동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의 장소나 시간, 가해자 등에 대한 정보를 다시 상기시켜준다. • 조사원은 응답자의 응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유도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p>◆ 경찰조치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2 번 문항은 응답자가 신고를 한 후 경찰이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를 질문하는 것이다.
<p>◆ 경찰조치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3 번 문항은 응답자가 경찰신고 후, 경찰이 취한 조치내용을 묻는 것이다.



<p>◆ 경찰사건처리 절차정보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4 번 문항은 본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응답자에게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 응답자가 경찰에게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를 들었다고 한다면, 24-5 번 문항으로 진행하여 응답받으며, 충분한 정보를 듣지 못했을 경우 24-6 번 문항으로 이동한다.
<p>◆ 사건처리설명 이해정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5 번 문항에서 경찰로부터 사건처리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응답자가 경찰의 설명 과정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p>◆ 경찰조치 만족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6 번 문항에서 경찰신고 후, 응답자가 본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의 조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p>◆ 범인검거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7 번 문항은 본 사건의 가해자(범인)가 실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는지를 묻는 것이다.

24-8 그 사건 발생 이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귀하는 직장일, 가사, 또는 학교 공부 등에 시간 손실이 있었습니까?

문항	있었다	없었다
1) 조사 협조 등 경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 _____ 일	②
2) 검찰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 _____ 일	②
3) 법정 진술 등 법원 관련 활동으로 입은 시간 손실	① _____ 일	②

24-9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① 피해가 심각하지 않아서
- ② 다른 방식이나 개인적으로 처리·해결해서
- ③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 ④ 경찰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⑤ 경찰이 가해자를 검거하지는 못하면서 오히려 귀찮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 ⑥ 가해자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
- ⑦ 보복이 두려워서
- ⑧ 피해가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 ⑨ 그 외의 이유(구체적으로: _____)



- ◆ 사법활동 협조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 24-8 번 문항은 본 사건 경찰신고 후, 조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서 사건의 사법처리로 인하여 응답자가 학업, 직장업무, 가사 업무에 시간손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 경찰, 검찰, 법원 관련 활동 각각에 대해 그러한 사유들로 인하여 시간손실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대략 얼마나 있었는지를 기입하도록 한다.
 - 24시간 미만은 1일로 조사한다.
- ◆ 경찰 미신고 이유
 - 24-9 번 문항은 24 번 문항에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질문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다.
 -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보기 중에서 가장 주된 이유와 차 순위, 두 가지를 선택하여 각각 기입하도록 한다. 만일, 보기에 해당내용이 없을 경우 '㉠ 그 외의 경우'를 선택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다.

25 귀하는 범죄피해 이후 다음과 같은 조치나 행동이 증가하였습니까?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밤에 자기 전에 문이 잘 잠겼는지 꼭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만약을 대비해서 호신도구(스프레이, 호루라기 등)를 가지고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3) 밤에 다닐 때에 누군가와 같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4) 범죄피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은 피해 다닌다	①	②	③	④	⑤
5) 밤에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미룬다	①	②	③	④	⑤
6) 밤에는 혼자 택시를 타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동네의 자율방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2-3일 이상 집을 바깥에 나갈 때 이웃집에 배달료(배달된 신문이나 우편물 치우기 등) 부탁한다	①	②	③	④	⑤

- ◆ 범죄피해 이후 조치나 행동
 - 범죄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범죄로부터 가족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장치를 갖추거나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범죄피해 이전보다 증가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본 동의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조사기관에서 제공하는 서식으로, 당사자가 동의한 개인정보는 조사목적(조사 검증)으로만 수집 및 이용되며 외부에 어떠한 형태로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확인 서명란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 본 조사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칸타퍼블릭에 있습니다.
- 본 조사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주체는 칸타퍼블릭이며, 수집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본 조사로 수집된 문서는 칸타퍼블릭의 폐기 위탁업무 담당기관을 통해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수집 항목	수집 목적	폐기 기간	확인 서명
성명, 주소, 연락처	본인 확인 및 조사 검증	조사완료 후 1년	

응답자(가구 대표) 성명	응답자 전화번호		검증
	집전화	() - -	
	휴대전화	() - -	

- | | |
|----------------------|--|
| <p>◆ 정보 수집/이용 동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완료되어야 최종 완료 • 통계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령에 의해 정보가 보호되고, 조사 완료 후 폐기된다는 점을 고지해야 한다. |
| <p>◆ 응답자 연락처</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한 연락처는 조사응답자가 응답한 내용 중 질문할 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반드시 고지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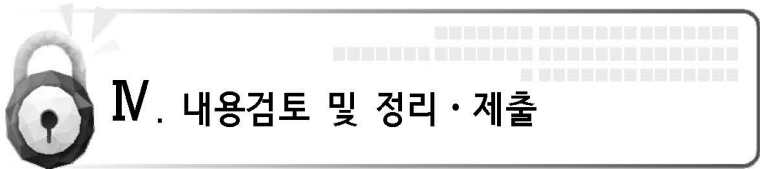


2016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지침서

IV. 내용검토 및 정리·제출

1. 기본 점검사항
2. 조사항목별 점검사항
3. 조사표 편철 요령 및 제출





IV. 내용검토 및 정리·제출

2016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지침서

1 기본 점검사항

- 지시문에 따라 기입되어야 할 문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건너 뛰어야 할 문항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한 가지 보기만 선택하는 것인데, 복수 응답한 경우가 없는지 확인한다.
- 표시내용이 수정된 경우, 마지막 수정된 값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숫자를 기입하는 문항의 경우, 단위에 맞게 조사되었는지 어떤 숫자인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보기 중 '기타'에 표시된 경우 구체적인 내용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하고 기입된 내용이 다른 보기 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포함될 경우, 해당 보기에 수정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2 조사항목별 점검사항

가. 「기초조사표」 점검사항

- 조사표 표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호,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가 해당 가구명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행정구역분류(시·도, 시·군·구, 읍·면·동)코드가 해당 지역에 맞게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가구원 번호는 '가구대표응답자의 기초조사표' H. 가구구성의 가구원 번호를 기재한다.



- 가구 전체 조사표의 총 부수가 「기초조사표」와 「사건조사표」부수의 합과 같은지 확인하고, 적힌 부수대로 조사표가 회수되었는지 확인한다.
- 조사대상 누락 확인
 - 가구대표응답자의 기초조사표 H.가구구성에 기재된 만14세 이상 가구원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한다.
 - H. 가구 구성에 기재된 만14세 이상의 가구원 수와 회수된 가구원의 기초조사표 수가 동일하지 확인한다. 동일하지 않다면 H.가구 구성의 '조사원이 기입합니다(사유코드)'란에 조사표를 작성하지 못한 사유가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 조사항목 간 상관관계가 논리적으로 잘 부합되는지 확인한다.
(예, 가구대표응답자와 관계가 '배우자'로 조사된 사람이 혼인상태에서는 '미혼 또는 사별 및 이혼' 으로 기재된 경우와 직업관련 등에 '전업주부'로 기재한 사람이 종사상 지위에 '임금 근로자'로 기재된 경우 등은 반드시 재확인하여 수정한다.)
- 조사원이 직접 작성하는 체크 사항은 본문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고, 사건조사표 수와 조사된 사건조사표 수가 일치하는지 재확인한다.
- 조사대상 가구 및 주변의 방법수준은 가구 방문 시 주변을 세심히 살펴서 작성하고, 모를 경우 응답자에게 질의하여 조사표에 기재한다.
- 주택의 유형은 조사시점(2017.5.1.)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나. 「사건조사표」 점검사항

- 조사표 표지
 -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가 해당 가구명부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행정구역분류코드(시·도, 시·군·구, 읍·면·동)가 해당 지역에 맞게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한다.
 - 사건조사표의 사건번호는 가구별이 아니라 가구원별로 1부터 순서대로 매겨졌는지 확인한다.

- ※ 예시 : A와 B가 사는 가구에 A는 2건의 범죄피해가 있었고, B는 1건의 범죄피해가 있었다고 가정할 때, A의 사건조사표 사건번호는 2매중 1번, 2매중 2번으로 기재해야 하며, B의 사건조사표 사건번호는 1매중 1번으로 기재한다.
- 지시문에 따라 기입되어야 할 문항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건너뛰어야 할 문항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3 조사표 편철 요령 및 제출

가. 조사표 편철

- 조사표의 내용검토가 끝나면 가구별로 '기초조사표'(가구대표응답자, 가구원 순), '사건조사표'의 순으로 정리한다.
 - 기초조사표는 가구대표응답자, 가구명부상 가구원 번호 순으로 정리한다.
 - 사건조사표는 가구원 번호별 사건번호 순으로 정리한다.
 - 정리한 조사표의 수가 '가구대표응답자의 기초조사표' 표지에 기재된 조사표의 수와 일치하는지 세어본다.
- 거처번호 및 가구번호가 빠른 조사표가 위로 오도록 정리하여, 조사구별로 10가구씩 편철한다.
- 조사표 편철 표지 작성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	□□□□	□□□	□□□□ - □	□□□□	□□□□	□□□
□□	□□□□	□□□	□□□□ - □	□□□□	□□□□	□□□

사무소	조사원 성명	조사원 전화번호	조사방법	가구대표 응답자 사건조사표 수
		() -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자기 기입식	총 () 부

가구 전체 조사표 수 총 () 부	가구 전체 기초조사표 수 총 () 부	가구 전체 사건조사표 수 총 () 부
---------------------------	-----------------------------	-----------------------------

- 편철할 가구의 조사구 번호를 확인하고 조사지역과 행정구역분류코드, 조사구 번호를 조사표와 동일하게 정확히 기입한다.



- 가구별 '가구대표응답자의 기초조사표' 표지의 조사표 부수를 참고하여, 해당 조사구에서 회수된 조사표의 총부수와 「기초조사표」, 「사건조사표」 각각의 총 부수를 계산하여 기입한다.
- 기입한 수대로 조사표가 빠짐없이 회수되었는지 재확인 한다.
- 해당 실사 사무소 명을 기입하고, 조사원 성명과 연락처를 기입한다.

나. 조사표와 가구명부 제출

- 부여된 시작번호와 추출간격 순서대로 처음 10가구를 조사하지 못하고, 대체한 가구가 있는 경우 가구명부에 가구별로 해당 사유(불응, 불능 등)를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한다.
- 가구명부와 함께 편철한 조사표를 슈퍼바이저에게 제출한다.
- 제출서류는 공문발송, 조사표, 가구명부, 조사구요도, 답례품 지급명부, 조사원 설문지, 전화검증지, 답례품 잔량 등
- 조사표 제출 후 종합 검증 과정 중 질의 시 성실히 응답한다.

4 파라데이터 작성 방법

가. 개요

- 정의 : 파라데이터란 조사 과정 중 발생하는 가구 접촉 기록을 말한다.
- 수집자료 : 조사기간 중에 가구별 방문횟수, 접촉 날짜 및 시간대, 접촉가구원, 가구방문 결과 등을 수집한다.

나. 파라데이터 작성방법

- 파라데이터 수집표는 조사원에게 배부되는 가구명부에 포함되어 있으며, 방문하는 모든 가구에 대해서 작성한다.
- 한 가구당 최대 4회의 방문기록을 남길 수 있다.
- 유고와 관계없이 최초 조사대상가구와 대체 가구 모두 작성한다.
 - 1번 가구가 최초 조사대상 가구인데 유고이고, 2번 가구를 대체했으나 다시 유고라서 3번 가구를 대체하여 조사를 완료한 경우 1번, 2번, 3번 가구 각각의 파라데이터를 모두 작성한다.

○ 파라데이터 수집표 예시

일련 번호	키값	조사구 번호	가구 번호	가구 번호	방문1	조사 현황	방문2	조사 현황	방문3	조사 현황
1	11010720801	066	001	001	__월 __일 __시		__월 __일 __시		__월 __일 __시	
2	11010720801	066	002	002	__월 __일 __시		__월 __일 __시		__월 __일 __시	

다. 가구 조사현황 작성법

조사 진행 중 코드		조사 완료 코드	
대체코드	내용	대체코드	내용
10	부분 조사	90	조사완료-원표본 가구
11	재방문 약속	91	조사완료-대체 가구
12	응답 불응	92	종료(응답 불응)
13	부재	93	종료(일시 부재)
14	응답 곤란	94	종료(응답 곤란)
		95	종료(빈집)
		99	종료(기타 _____)

○ <조사 진행 중 코드> : 조사가 진행 중일 때 작성하는 코드

- 부분 조사(10) : 조사표를 작성했으나, 완료하지 못함
- 재방문 약속(11) : 응답자가 바쁘거나, 미성년자만 있어서 다음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함
- 응답 불응(12) : 가구대표 응답자가 불응했으나, 추가 설득해야 함
- 부재(13) : 조사기간 중에 찾아 갔으나 응답자를 만나지 못함
- 응답 곤란(14) : 방문시 고령, 장애, 언어문제로 집에 있는 가구원을 조사하지 못하고, 다음에 다른 가구원이 있는지 방문할 예정임

○ <조사 완료 코드> : 조사 완료 후에 작성하는 코드

- 조사완료-최초 조사가구(90) : 원표본 가구를 조사 완료함
- 조사완료-대체 조사가구(91) : 대체된 가구를 조사 완료함
- 종료(응답 불응)(92) : 3번 이상 찾아가 설득했으나 응답을 거부함
- 종료(일시 부재)(93) : 3번 이상 찾아가고, 이웃집이나 안내문을 통해서도 응답자를 만나지 못함
- 종료(응답 곤란)(94) : 고령, 장애, 언어문제로 조사불가
- 종료(빈집)(95) : 이사, 폐가, 재개발 등의 이유로 집에 아무도 살지 않는 걸 확인
- 종료(기타)(99) : 만14세 미만의 가구원만 있거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상가 등)이거나, 기숙사 등 집단시설이어서 조사하지 못함.



2016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지침서

V. 부록

1. 색인 목록
2. 행정구역(시군구) 분류부호
3. 주요 질의사례





V. 부록

2016년 기준 국민생활안전실태조사 지침서

1 색인 목록

색인명	의미
가구대표 응답자	조사대상 가구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가구원) 중에서 해당가구의 생활 상황을 대표하여 응답하여 줄 수 있는 사람(가구원)
가구원	주민등록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기준일(2017. 5. 1.) 현재 조사대상 가구에 상주하는 사람. ☞ 혈연관계가 없는 동거인이라도 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은 가구원에 해당됨.
가정폭력	부모, 배우자, 자식, 형제자매, 친척,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 흔히 물리적 폭력, 욕설, 방임 및 유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대 행위로 나타내며, 가정폭력은 범죄로서, 폭행죄 중의 하나이다.
강간	강간(強姦)은 성폭력(sexual assault)의 일종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억지로 성교하는 것을 의미. 물리적 폭력이나 구속 등의 신체적인 위협 외에도 협박과 같은 정신적 폭력을 사용하여 억지로 동의를 받아낸 경우, 또는 상대방이 약물이나 알콜에 취하거나 미성년자로서 성교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한 경우에도 강간으로 간주됨.
경찰활동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공무원의 역할과 업무
괴롭힘	괴롭힘이란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특정한 사람 또는 사람들에 의해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유무형의 위해행위로서, 피해자의 일상생활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행위 ☞ 특히 상대방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스토킹이라고 함.



색인명	의미
구타	물리적 혹은 상해를 포함하는 비합법적인 학대의 한 형태로서, 때리거나 치는 행위
근로소득	피고용자가 육체적·정신적 노동을 하여 보수로 얻는 소득·봉급·급료·임금·세비(歲費)·연금·상여금 등
동네	자기가 사는 집의 근처 : 평소 자신이 '우리 동네'라고 생각하는 지역으로서 비슷한 유형과 비슷한 가격의 주택가를 말하며, 같은 학교, 교회, 병원, 상가 및 정류장(버스나 지하철)을 공유하는 지역으로서 다른 동네와는 차도나 담(벽) 등으로 차단되어 있는 지역
만취	만취상태란 술이 취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제력을 상실한 상태
무기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는 데 쓰는 도구
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종료함에 이르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범죄는 그 실행에 착수하여 처음 행위자가 의도한 대로 소기의 결과를 거두는 것도 있지만, 그 중도에서 좌절되는 것도 있고 또 스스로 중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그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
범죄	국가의 형사법령(법규)을 위반한 행위. (유의어) 범법, 위법행위, 범행(범죄행위) ☞ 타인의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가거나(절도) 사람에게 욕설을 하는 행위 (모욕)로부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행위(경제범죄 및 국가보안법위반)에 이르기까지 그 해당범위는 매우 넓은 ☞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스토킹과 같은 행위도 우리나라 현행법령에 따라서 모두 범죄로서 처벌되는 행위임
사기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일정한 의사표시나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사람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인을 기망(欺罔)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가 있고, 이로 인하여 타인이 착오에 빠졌음을 요건으로 함
사업소득	농업, 어업,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 따위에서 생기는 소득. 총수입액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공제한 금액

색인명	의미
상습피해	상습피해란 비슷한 방법으로 5회 이상 반복적으로 피해(예를 들어, 스토킹,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를 당했으나 각 사건을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
성추행	일방적인 성적 만족, 자극, 흥분을 얻기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키스를 하거나 상대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등)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강제추행은 이러한 추행 행위 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강제력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함
성폭력	성폭력은 성희롱이나 성추행, 성폭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성폭행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 미수를 의미하며, 강간(強姦)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손괴	어떤 물건을 망가뜨림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
손상	일반적으로 재료의 모든 특성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 흔히 손괴와 유의어로 사용 1. 물체가 깨지거나 상함 2. 병이 들거나 다침 3. 품질이 변하여 나빠짐
스토킹	상대방의 사생활을 지속적으로 침해(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편지, 전자우편,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함으로써 반복적으로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행위
위험한 물건	사람 신체에 대한 가해력을 가진 기구
위협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것. 협박과 동의어
이전소득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고 개인이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는 수입. 보조금, 보험금, 연금



2 행정구역(시군구) 분류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행정구역명	부호
서울특별시	11	부평구	23060	연천군	31350	공주시	34020	경상북도	37
강남구	11230	서구	23080	영통구	31014	금산군	34310	경산시	37100
강동구	11250	연수구	23040	오산시	31140	논산시	34060	경주시	37020
강북구	11090	용진군	23320	오성구	31053	당진시	34080	고령군	37370
강서구	11160	중구	23010	용인시	31190	동남구	34011	구미시	37050
관악구	11210	광주광역시	24	원마구	31051	보령시	34030	군위군	37310
광진구	11050	광안구	24050	의령시	31170	부여군	34330	김천시	37030
구로구	11170	남구	24030	익정부시	31030	서북구	34012	남구	37011
금천구	11180	동구	24010	이천시	31210	서산시	34050	문경시	37090
노원구	11110	북구	24040	일산동구	31103	서천군	34340	봉화군	37410
도봉구	11100	서구	24020	일산서구	31104	아산시	34040	북구	37012
동대문구	11060	대전광역시	25	장안구	31011	예산군	34370	상주시	37080
동작구	11200	남구	26020	중원구	31022	천안시	34010	성주군	37380
마포구	11140	대덕구	25050	차인구	31191	창양군	34350	안동시	37040
서대문구	11130	동구	25010	파주시	31200	태안군	34380	영덕군	37350
서초구	11220	동구	26030	팔당구	31013	홍성군	34360	영양군	37340
성동구	11040	북구	26040	포천시	31070	전라북도	35	영주시	37060
성북구	11080	서구	25030	포천시	31270	고창군	35370	영천시	37070
송파구	11240	울주군	26310	하남시	31180	군산시	35020	예천군	37400
양천구	11150	유성구	25040	화성시	31240	김제시	35060	울진군	37420
영등포구	11190	중구	25020	강원도	32	남원시	35050	익성군	37320
영산구	11030	중구	26010	강릉시	32030	덕진구	35012	청도군	37360
은평구	11120	세종특별자치시	29	고성군	32400	무주군	35330	청송군	37330
종로구	11010	세종시	29010	동해시	32040	부안군	35380	철곡군	37390
중구	11020	경기도	31	삼척시	32070	순창군	35340	포항시	37010
중앙구	11070	가평군	31370	속초시	32060	원산구	35011	경상남도	38
부산광역시	21	고양시	31100	양구군	32380	완주군	35310	거제시	38090
강서구	21120	과천시	31110	양양군	32410	익산시	35030	가령군	38390
금정구	21110	광명시	31060	영월군	32330	임실군	35350	고성군	38340
남구	21070	광주시	31250	원주시	32020	장수군	35340	김해시	38070
동구	21030	구리시	31120	원주군	32390	전주시	35010	남해군	38350
동래구	21060	군포시	31160	정선군	32350	정읍시	35040	마산합포구	38113
부산진구	21050	권선구	31012	철원군	32360	진안군	35320	마산회원구	38114
북구	21080	기흥구	31192	춘천시	32010	전라남도	36	말양시	38080
사상구	21150	김포시	31230	태백시	32050	강진군	36390	사천시	38040
서하구	21100	남양주시	31130	평창군	32340	고흥군	36350	산청군	38370
서구	21020	단원구	31092	홍천군	32310	곡성군	36320	상산구	38112
수영구	21140	덕양구	31101	화천군	32370	광양시	36060	임피시	38100
연제구	21130	동두천시	31080	황성군	32320	구례군	36330	여령군	38310
영도구	21040	동안구	31042	충청북도	33	니주시	36040	역성구	38111
중구	21010	만안구	31041	괴산군	33360	담양군	36310	진주시	38030
해운대구	21090	부천시	31050	단양군	33380	목포시	36010	진해구	38115
대구광역시	22	분당구	31023	보은군	33320	무안군	36420	창녕군	38330
남구	22040	상록구	31091	상당구	33011	보성군	36360	청원시	38110
달서구	22070	성남시	31020	영동군	33340	순천시	36030	통영시	38050
동구	22020	소사구	31052	옥천군	33330	신안군	36480	하동군	38360
북구	22050	수원시	31010	음성군	33370	여수시	36020	함안군	38320
서구	22030	수정구	31021	재천시	33030	영광군	36440	함양군	38380
수성구	22060	수지구	31193	증평군	33390	영암군	36410	함천군	38400
중구	22010	시흥시	31150	진천군	33350	완도군	36460	제주특별자치도	39
인천광역시	23	안산시	31090	청원군	33310	장성군	36450	서귀포시	39020
강화군	23310	안성시	31220	청주시	33010	장흥군	36380	제주시	39010
계양구	23070	안양시	31040	충주시	33020	진도군	36470		
남구	23030	양주시	31260	홍덕구	33012	함평군	36430		
남동구	23050	양평군	31380	충청남도	34	해남군	36400		
동구	23020	여주군	31320	계룡시	34070	화순군	36370		

3 주요 질의 사례

1. 조사대상 가구인지 여부

Q1. 조사대상 가구가 사찰(절)인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됩니까?
◇ 사찰(절)에서 주로 먹고 자는 사람이 있다면 조사대상입니다.
Q2. 대상가구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낮에만 식당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사를 해야 합니까?
◇ 영업이 주된 목적이라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식당에서 주로 먹고 자는 사람이 있다면 조사대상이 됩니다.
Q3. 집 2채를 가지고 있는 A가 한 곳의 전세가 나가게 되면서 2곳 모두에서 A가 생활하고 있는데 2곳 모두 조사대상인 경우 대체를 해야 하는지요?
◇ 두 가구 중 응답자가 주로 거주하는 집을 조사하고, 나머지 한 가구는 다른 집으로 대체해서 조사합니다.
Q4. 외국인도 조사하나요?
◇ 외국인도 조사해야 합니다. 단, 가족 모두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 경우 응답 곤란으로 처리하고, 가구대체 요령에 따라 다른 가구로 대체합니다.
Q5. 여러 번 방문하였는데도 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 대체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사람이 사는 것이 확실하다면 일시 부재(조사완료 코드: 93)로 처리하고, 폐가 등 빈 집이면 빈집(조사완료 코드: 95)으로 처리합니다.
Q6. 가구명부의 가구대표 응답자 이름과 현재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대표 응답자의 이름이 다른데 조사해야 하나요?
◇ 금번 조사의 가구명부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작성되어 이사 등의 사유로 가구명부의 이름과 현재 사는 사람의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동 조사는 주소를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명부의 가구대표 응답자 이름과 현재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대표 응답자 이름이 다르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Q7. 빈집, 공장, 응답불응인 경우 대체해도 되나요?
◇ 빈집, 공장 : 사람이 숙식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 응답불응 : 몇 번을 방문하여도 못해주겠다고 화를 내고 불응함
⇒ 두 경우 모두 다음 가구로 대체합니다.



Q8. 증증치매이신 분, 정신지체 장애인, 정신질환자분들은 조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신빙성 있는 답변을 얻기 어렵고 스스로의 상황판단이 잘 안되므로 대리응답으로 는 제대로 된 조사가 어려울 듯합니다. 이런 경우, 응답곤란으로 처리하면 되는지요?

◇ 치매, 정신질환 등으로 조사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가구원의 경우 기초조사표 1번~22번의 인식 항목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범죄피해경험 여부는 보호자(가구 대표 응답자)가 대신 답변할 수 있으며, 사건이 있는 경우 사건조사표도 대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구성의 사유코드에 대리응답으로 기입합니다.

Q9. 재개발로 인해서 1번 가구부터 11번 가구까지 허물고 현재 건물 신축중인 경우 대체사유 빈집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 재개발로 집이 없어지고 신축 중이므로 빈집(조사완료 코드: 95) 처리하면 됩니다.

Q10. 작년부터 10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지 며칠 안 된 1인 가구원인 경우 대상가구에 해당 되는지요?

◇ 대상가구에서 제외하고 빈집 처리 후 다른 가구로 대체합니다.

Q11. 주소지에 아예 건물이 없는 경우 대체 사유를 어떤 것으로 해야 할까요?
(폐가도 아니고 아예 주소오류)

◇ 조사완료 코드 95는 빈집, 폐가 외에 건물이 없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Q12. 우리집은 범죄와 상관이 없는데 우리집이 왜 선정된 것이며, 꼭 해야 하는 것인지?

◇ 범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가구 및 개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인식 조사 및 피해경험을 물어보는 조사로서 범죄피해가 없으시면 없다고 응답하시면 되며, 00님 가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구로 선정이 되어 안내문을 보내드렸으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답합니다.

Q13. 주소를 찾아서 가보았더니 가족 농장인데 조사 대상인가요?

◇ 가족 농장에서 해당 가구원이 먹고 자고 하면 가구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입니다.

Q14. 혼자 사는 할머니가 요양원에 가셨는데 조사 대체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 응답자가 일시부재(코드:93)인 경우로 파라데이터 수집표에 표시하고 가구를 대체합니다.

Q15. 응답자 이름 및 생년월일 연락처 알려주기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조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는 작성을 생략합니다.

Q16. 가구주만 대표로해서 가구상황을 확인하면 되는데 왜 다른 가구원까지 설문을 받고 이름 및 연락처를 받아 가는지 물어보면 어떻게 응답해야 하나요?
◇ 본 조사는 가구대상 범죄 피해뿐만 아니라 가구원 개인이 경험한 범죄피해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가구 내 만 14세 이상의 가구원 모두가 조사대상입니다. 이름과 연락처 기입은 조사입력의 오류사항 점검을 위한 확인용에 불과합니다.
Q17. 조사구 주소가 불분명하고 거주민의 입주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조사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조사구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이거나 신축 아파트의 입주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는 조사구 대체가 가능합니다.
Q18. 신축 아파트나 원룸 같은 경우 출입카드가 있어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관리사무소 등에서 협조를 안 해줄 경우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한 조사구에서 10부를 다 못 채울 것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 조사구를 대체해야 하는지?
◇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곳은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사 협조를 구하고 그래도 협조가 어려울 경우 실사사무실 및 본사 차원에서 협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Q19. 가구원 중에 상근예비역이 있는데 조사대상인가요? 아닌가요?
◇ 상근예비역의 경우 집에서 출퇴근을 한다면 조사 대상입니다.
Q20. 가족은 아닌데 한국인과 같이 사는 외국인은 조사 대상인가요?
◇ 같이 먹고 자는 가구원일 경우 조사 대상으로 가구원 조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2. 가구구성표 작성

Q1. 조사표의 가구구성에서 부부만 살고 있는데 한명이 일시 출장 등으로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 H. 가구구성 항목에서 두 명 모두 조사해야 하는지? 한 명만 조사해야 하는지?
◇ 기초 조사표 H. 가구구성 항목에 두 명 모두 조사하고, 출장 중인 가구원은 가능한 다른 가구원이 대리응답하게 합니다.
Q2. 기초조사표의 H. 가구구성 항목에 개인 이름은 조사하지 않나요?
◇ 응답자의 응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대표 응답자와의 관계만 정확히 기재합니다.
Q3. 2016년에는 일을 했으나, 조사시점 현재 일을 하지 않을 경우, 기초조사표 H. 가구구성 항목의 직업항목과 종사상 지위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기초 조사표 H 항목은 조사시점(2017년 5월 1일 기준) 현재 상태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직업 관련 항목은 무직, 종사상 지위는 해당없음으로 조사하시면 됩니다.





Q4. 가구원 모두가 만 18세 미만이면 가구대표 응답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 ◇ 만 14세 이상인 가구원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구대표 응답자로 정합니다.

Q5.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의 경우 직업과 종사상 지위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 공부하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을 비교하여 공부하는 시간이 많으면 직업과 종사상 지위는 학생으로 조사하고, 일하는 시간이 많으면 일의 종류에 따라 직업과 종사상 지위를 조사해야 합니다.

Q6. 타지에서 공부하다 주말에만 오는 자식도 조사하나요?

- ◇ 주 거처가 타지에 있으면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Q7. 스님이나 목사님은 종사상 지위를 어떻게 하나요?

- ◇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어느 재단에 소속 되어 있어 상용임금근로자로 처리합니다.
- ◇ 성당 신부님과 수녀님 역시 상용임금근로자로 처리합니다.

3. 기초조사표 배경문항 작성

Q1. 최종 학력 조사 시 재학, 중퇴, 휴학인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 ◇ 재학 중인 경우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력을 최종 학력으로 기재하며, 휴학, 중퇴의 경우 휴학, 중퇴한 시점의 학력을 최종학력으로 기재합니다.

Q2. 응답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 응답자 이름과 전화번호는 내검시 재질문하기 위해 기재하는 것으로 응답자에게 기재하는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하여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계속 응답을 거부하면 응답자 성명란에 가구구성표의 관계를 참고하여 “가구대표 응답자”, “가구대표 응답자 배우자”, “첫째 자녀”, “둘째 자녀” 등으로 작성하되, 전화번호는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일, 응답자가 강력하게 거부하면 조사표에 대한 응답만 진행합니다.

Q3. 자녀가 주는 용돈, 생활비 및 연금도 소득에 해당 되나요?

- ◇ 자녀들로부터 받은 용돈, 생활비는 이전소득이며, 연금도 소득입니다. 따라서 기초조사표 22번 문항 가구소득에 포함하여 조사합니다.

Q4. 직장 때문에 타지에서 거주하는 남편의 소득은 부인 가구의 소득에 포함하나요?

- ◇ 남편이 부인에게 주는 생활비는 부인 가구의 소득으로 포함합니다.



Q5. 17번 문항에서 20년 동안 같은 동네에서 수차례 이사한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동네로 보고 18번 ㉔경험없음으로 조사하는게 맞는지요?

◇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사한 경우는 해당 동네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고 전체 거주 기간을 응답하면 되고 18번 문항에서 이사 횟수는 조사해야 합니다.

Q6. 아파트에 회사직원 2명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구대표응답자 22번 문항에 소득 부분에 직원 2명 소득을 합한 금액인가요?

◇ 가구 소득이므로, 타인과 살 경우라도 가구원 전체 소득을 합산합니다.

4. 기초조사표 동네와 이웃환경, 일상생활과 범죄예방 활동 작성

Q1. 기초조사표 6번 문항에서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같이 살지 않는 자녀와 배우자도 포함하는 건가요?

◇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응답하셔야 합니다.

Q2. 장애나 고령, 언어문제 등으로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장애나 고령으로 응답이 불가능한 경우는 조사대상 가구원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언어문제 등과 관련해서 대리응답이 가능하다면 사유코드에 대리응답이라고 기입한 후 조사를 진행합니다. 응답자가 직접 응답을 할 경우에는 응답할 수 없는 문항은 그냥 넘어가시고 해당 문항 응답 곤란 사유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5. 조사대상 범죄피해인지 여부

Q1. 범죄피해란 무엇이며, 조사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 응답자가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하면 범죄피해사건으로 봅니다.
- ◇ 이 조사에서 제외되는 범죄는 살인, 유괴, 약물남용, 도박, 성매매, 교통사고 등입니다.

Q2. 본인 부주의로 지갑과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사람이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된 경우와, 잃어버린 핸드폰 사용으로 요금이 청구되었다면 범죄피해에 해당됩니까?

- ◇ 단순한 분실의 경우는 범죄피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분실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여 금액피해가 있었다면, 본 조사대상 피해에 해당됩니다.



Q3. 시골집에서 고물상에 팔려고 모아 둔 빈병, 비닐, 깡통 등을 누군가가 몰래 가져간 경우 범죄피해에 해당되니까?

◇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응답자의 허락없이 누군가 몰래 가져간 것이므로 범죄피해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4. 자택이 아닌 식당, 가게에 도둑이 들었을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되니까?

◇ 만일 해당 식당이나 가게에서 주거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주거침입에 해당되며 피해내용을 기입해야 합니다.

Q5. 10세 아이의 자전거를 도둑맞았으면 조사하나요?

◇ 사건 장소가 집이면 가구침입사건이므로 가구대표 응답자에게 조사하고, 집밖이면 만 14세 미만인 가구원이 도둑맞은 사건이므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Q6. 경운기를 도둑맞았으면 조사하나요?

◇ 응답자가 도둑맞은 경운기는 조사하나, 대리점의 도난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Q7. 도박하다가 속임을 당한 경우 조사하나요?

◇ 도박은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Q8. 별거중인 남편이 부인의 컴퓨터를 가져갔다면 도난으로 조사하나요?

◇ 공식 이혼한 경우가 아니므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Q9. 이메일로 위협한 경우도 조사하나요?

◇ 직접적인 접촉 없이 이메일이나 전화로 위협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Q10. 편의점에서 일어난 도난도 조사하나요?

◇ 편의점의 물건을 도둑맞은 경우 조사하지 않으나, 편의점 점원이나 고객이 개인물건(지갑 등)을 잃어버렸거나 빼앗긴 경우는 조사합니다.

Q11.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잠시 비운 사이 책상위의 책을 잃어버렸다면?

◇ 응답자의 부주의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누군가 고의로 물건을 가져갔다면 도난 사건으로 봅니다.

Q12. 직장동료들이랑 집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다음날 고가의 시계가 없어진 걸 알고, 동료 중 한 명이 훔쳐갔다고 의심한다면?

◇ 응답자가 동료가 훔쳐갔다고 확신한다면 도난사건으로 조사합니다.

Q13. 극장에서 가죽옷을 빈자리에 놔두었는데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 쳐다보니 훔치려던 사람이 일어나 극장을 나간 경우 조사하나요?
◇ 미수에 그친 도난 사건으로 조사합니다.
Q14. 문구점에서 학생들이 물건을 몰래 훔쳐간 피해가 수십 건이 있을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 사업체의 물건이 도둑맞으면 조사대상 범죄 피해가 아닙니다.
Q15. 청소년이나 성인여성이 골목에서 바바리맨을 만났을 경우 30번 성폭력 범죄에 해당이 되나요?
◇ 성적인 접촉이나 시도없이 신체만 보여주는 것은 조사대상 범죄 피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Q16.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도 범죄 피해에 해당되나요?
◇ 폭행이나 위협이 있었으면 범죄피해에 해당이 되나 단순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조사대상 범죄 피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17. 오토바이를 도로에 잠시 놓고 불 일 보러 간 사이 오토바이가 없어졌는데 20일 후에 다시 찾은 경우 도난으로 보나요?
◇ 다시 찾았다고 하더라도 사건조사표를 기입해야 합니다.
Q18. 사업장에서 지나가던 술 취한 취객이 들어와 폭행당할 뻔한 적이 있는 경우 사건조사표 작성하나요?
◇ 사업장에서 본인이 위협을 느끼고 폭행당할 뻔했기 때문에 범죄피해에 해당이 되고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Q19. 홈페이지 제작을 외주업체에 맡겨서 결제까지 했는데 부도가 나서 결제금액 되돌려 못 받은 경우 사건조사표 작성하나요?
◇ 일부러 속여서 부도를 낸 것이 아니므로 사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Q20. 통장에서 5개월 정도 본인도 모르게 출금이 된 것을 나중에 알고 경찰에 신고한 후 나중에 찾은 경우 사건으로 보나요?
◇ 본인 통장으로 돈이 다시 입금 되었다 해도 범죄피해 사건으로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21.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집에 가스검침원으로 위장해서 할머니 머리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할아버지가 옆에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놀라 도망간 경우는?

◇ 가구침입해서 할머니를 위협했기 때문에 할머니 사건조사표 1건 작성하고 할아버지는 사건조사표 작성하지 않습니다. 해당 경우는 가구 대상 범죄피해로 동일한 가구 내에서 발생한 동일 사건은 피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응답자 한명이 응답하도록 합니다.

◇ 할머니 사건조사표 작성 시 무기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Q22. 부부가 자고 있는 새벽에 창문을 깨고 도둑이 들어와 각각 송곳으로 위협한 경우 몇 개의 사건조사표 작성하나요?

◇ 가구침입을해서 부부 중 한사람만 위협하고 해를 입혔으면 사건조사표 1건이지만 부부가 각각 위협의 피해를 당했다면 사건조사표 2개 작성합니다.

Q23. 기초조사표 작성 시 범죄피해 경험은 있었으나 사건조사표 작성을 강력하게 거절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건조사표는 해당 범죄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유형과 피해 정도 등을 물어보는 것으로서 향후 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 등에 쓰이는 자료가므로 꼭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설득하도록 합니다.

Q24. 할머니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중이었다고 경찰에게 연락이 왔지만 실질적인 금전피해는 없었다고 하면 사건조사 작성해야 되는지?

◇ 금전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Q25. 주택 주변에 주차한 차량을 어떤 차인지는 모르지만 옆을 긁고 가서 견적이 20만 원 정도 나와 일단 수리는 하고 경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범죄피해인가요?

◇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로 사건조사표 작성 대상입니다.

Q26. 대학생 2명이 거주를 하는데 2명이 자전거 1대를 같이 타고 있는데 2014년에 한번 잃어버리고 찾고 또 잃어 버린 것으로 총 두 번 잃어버린 경우는 한사람한테만 사건조사표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명한테 모두 받아야 하는 것인지?

◇ 가구에서 같이 쓰는 재산을 도둑 맞은 경우로 두명 중 더 기억이 나는 가구원에게 해당 사건의 사건조사표를 받으면 되고 시기가 다르므로 2건을 받아야 합니다.

Q27. 친구의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친구에게 돈을 입금하게 한 사기의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친구를 사칭하여 돈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조사표 작성해야 합니다.

Q28. 협박 문자 및 메시지, 메일 등으로 위협한 경우도 범죄피해에 해당되는지?

◇ 전화나, 이메일로만 협박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대면했을 때 협박을 한 경우는 없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 Q29. 집에 도둑이 들었을 시 사람이 아무도 없을때 가구원이 키우던 애완동물을 상해한 경우도 피해에 해당되나요?
- ◇ 주거침입 범죄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1건의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 Q30. 회사에서 임금을 못받아(임금체불) 노동부에 몇 번 신고했어도 임금을 못받을 경우에도 피해에 해당되나요?
- ◇ 임금체불은 사기죄에 속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조사대상 범죄피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Q31. 신분증을 도난당했는데 명의도용으로 핸드폰 개통이 되어 요금이 청구된 경우 범죄 피해에 해당되나요?
- ◇ 범죄피해에 해당됩니다.
- Q32. 집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돌려주는 경우 피해에 해당되나요?
- ◇ 집주인인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는 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조사대상 범죄 피해가 아닙니다.
- Q33. 식당과 주거 공간이 붙어있는 집인데, 주거공간에서 식당을 통해 도둑이 들었을 경우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 ◇ 주거공간이 붙어 있으므로 조사대상 가구가 맞으며, 도난에 대한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 Q34. 응답자가 작년에 출산 후 부모님 집에서 1개월간 살았는데, 부모님 집에 도둑이 들은 경우인데 범죄 피해가 맞는지?
- ◇ 본인의 집이 아닌 부모님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조사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6. 범죄피해 사건 수 결정

- Q1. 부부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남편이 폭행을 당하고, 가해자가 아내에게 협박과 폭언을 한 경우 어떻게 조사하나요?
- ◇ 남편과 아내 모두 각각의 범죄피해로 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모두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 Q2. 아버지(가구대표 응답자)와 아들이 동일한 가구침입 절도 사건을 응답하면?
- ◇ 가구대표 응답자인 아버지의 피해사건만 조사합니다. 만일 아들이 사건피해 내용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면 아들이 응답하도록 합니다. 가구 대상 절도인 경우는 동일한 범죄피해에 대한 응답이 중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 Q3. 사건조사표를 작성하면서 다른 범죄피해 경험이 기억나면?
- ◇ 기초조사표의 범죄피해경험을 추가하고, 그에 따라 사건조사표를 추가로 작성합니다.
- Q4. 응답자가 기초조사표의 폭행과 도난에 각각 응답했으나 사건조사표 작성시 동일한 사건임을 알았으면?
- ◇ 기초조사표를 수정하고 사건조사표를 한 건만 작성합니다.
- Q5. 가구대표 응답자 차량과 배우자 차량이 파손 되었을 경우 각각의 사건으로 보는지, 가구대표 응답자에게 두 사건을 조사해야 하는지?
- ◇ 동일 시점 및 동일 장소에서 발생한 피해였다면 1건의 사건조사표를 작성하고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발생했다면 각 사건피해에 대해 응답하도록 합니다.
- Q6. 주거침입이 3건 있었는데 1건은 범인과 마주쳤고, 2건은 침입할 뻔한 경우 어떻게 조사하나요?
- ◇ 기초조사표 25번 문항에 3건으로 조사하고, 사건조사표는 사건별로 3개 작성합니다.

7. 사기(속임)

<p>Q1. 인터넷에 경품을 준다고 개인정보(주소, 주민등록번호 등)를 입력했는데 경품은 안 오고, 보험가입 권유 전화만 걸려오는 경우 범죄피해에 해당하나요?</p>
<p>◇ 개인정보를 빼내 다른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재산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 본 조사대상 범죄 피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p>
<p>Q2. 갯돈을 사기 당한 경우 어떻게 조사하나요?</p>
<p>◇ 기초조사표 23번 문항 “기타의 속임(사기)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p>
<p>Q3. 가족끼리 돈을 갚겠다고 빌려간 후 갚지 않았을때 속임(사기)에 해당 됩니까?</p>
<p>◇ 가족관계에서도 애초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려간 경우라면 속임(사기)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p>
<p>Q4. 아는 사람이 보험업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보험금만 가로채고 보험에는 가입이 안 되었을 경우 속임(사기)에 해당됩니까?</p>
<p>◇ 기초조사표 23번 문항 “상점에서 결제를 하였으나 물건을 받지 못함”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p>
<p>Q5. 전화가 걸려 와서 받았는데 과도한 요금이 빠져나간 경우 사기에 해당 됩니까?</p>
<p>◇ 사기에 해당되며 사건조사표를 작성해야 합니다.</p>
<p>Q6. 홈쇼핑에서 물건 구입 후 반품 처리 했다면 사기인가요?</p>
<p>◇ 반품 요청하여 반품 또는 환불 처리 등이 이루어졌다면 사기가 아닙니다. ◇ 홈쇼핑에서 명확히 1kg이라고 명시 후 500g만 배송하고 환불 등을 거부했다면 사기에 해당됩니다. ◇ 화면상과 실제가 다르다고 느끼는 경우는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사기가 아닙니다.</p>
<p>Q7. 보이스피싱으로 주민번호, 이름 등 개인 정보를 보낸 경우 재산상의 피해로 보나요?</p>
<p>◇ 본 조사 대상의 범죄피해에는 실제로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p>



8. 상습 범죄피해

Q1. 소량의 농작물을 여러 차례 도둑 맞았는데, 누가, 언제 훔쳐갔는지 모를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되나요?

◇ 기초조사표 24번 문항 ㉔그 외의 물건에 표시하고, 도둑맞은 피해횟수를 적습니다. 피해횟수가 5건 이상인 경우 상습피해로 보고, 사건조사표 수는 1개만 작성합니다.

Q2. 직장동료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을 5번 당했는데 상습피해로 보나요?

◇ 5번 각각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보나, 구별할 수 없다면 상습피해로 보고 사건조사표는 1부만 작성합니다.

Q3. 학교 근방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에게 여러 번 돈을 빼앗긴 경우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 비슷한 방법으로 5회 이상의 반복적인 범죄피해를 당하였으나 잘 구별할 수 없는 경우를 상습피해라 하며, 이 경우에는 가장 심각했던 범죄피해 1건을 사건조사표에 작성합니다.

◇ 만일 비슷한 방법으로 5회 이상의 범죄피해를 당했다라도, 각각의 범죄피해사건을 잘 구분할 수 있다면 개별 사건으로 보며, 그 피해사건 수만큼 사건조사표를 별도로 작성합니다.

Q4. 같은 주차장에서 5건의 범죄피해를 당했는데, 4건은 누군가 유리창을 부수고 차 안에 물건을 훔쳐갔고, 1번은 성추행을 당했다면 상습피해로 보는지?

◇ 같은 주차장에서 일어났다 하더라도 범죄피해 유형이 다르므로 상습피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5건의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9. 사건조사표 조사항목

Q1. 한 가구원이 여러 개의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사건조사표 작성순서는?

◇ 기초조사표의 관련문항 순서로 작성하되, 관련문항이 동일한 경우 범죄피해 일시가 제일 빠른 사건부터 조사합니다.

Q2. 도난과 관련하여 범죄피해 물건 가격이 얼마 정도가 되어야 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나요?

◇ 피해금액에 관계없이 범죄피해로 보고,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Q3. 단순 폭력사건에서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와 현장에서 합의했을 경우 범인검거 여부는 어떻게 조사해야 하나요?

◇ 응답자가 범죄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하면 기초조사표 27번 또는 28번에 응답하고, 사건조사표를 작성합니다. 또한 사건조사표 24-7번 범인 검거에는 “모두 검거하였다”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Q4. 드라이버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는데, 위험한 물건(사건조사표 8 번)으로 보나요?

◇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공격했을때만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고 봅니다.

Q5. 무력은 아니지만 원치않는 성적인 접촉이란 무엇인가요?

◇ 힘을 사용(밀거나 잡음)하지 않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 포옹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Q6. 가해자의 공격으로 안경이 깨져 새로 구입했는데, 이것도 의료비로 보나요?

◇ 안경 구입도 의료비로 봅니다.

Q8. 무언가를 훔치겠다고 위협하는 사례는?

◇ 예를 들어 '재킷을 달라. 안 그러면 벗겨 가겠다'고 하든가, 피해자에게 급히 다가가 목걸이를 만지는 것을 훔치겠다는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Q9. 수리공이 집에서 가전제품을 수리하던 중 물건을 훔치면 주거침입인가요?

◇ 피해자의 허락으로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은 아니나, 도난사건입니다.

Q10. 택배원으로 속여 피해자가 문을 열게 하여 집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인가요?

◇ 피해자를 속여 들어왔으므로 주거침입으로 봅니다.

Q11. 택시기사가 택시 안에서 현금을 승객에게 도난당한 경우 사건 발생장소는?

◇ 교통시설 내부이면서, 택시기사의 직장으로 봅니다.(사건조사표 5 번)

